

교육환경평가 검토 가이드북



교육환경평가 검토 가이드북



■ 본 가이드북은 교육환경평가서 검토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항목과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전문 분야의 담당자들이 엄선하여 필수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였으며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표현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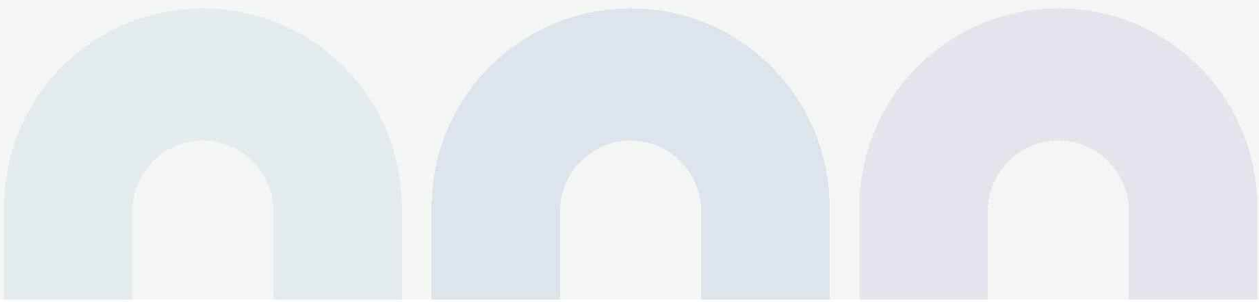
■ 본 가이드북에서 기술한 법적 규정은 재.개정될 수 있으니 가이드북 발행 연도와 법적 규정 시행 연도를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이드북 내에서 제시한 사례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편적인 사례를 제시했을 뿐 예외적인 부분까지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을 권장합니다.



Contents

I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이해	1
II	가이드북의 활용 방법	9
III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검토항목	13
	가. 제도 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	15
	나. 제도 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례 점검	16
IV	평가기준별 검토항목	43
	가. 평가기준별 검토 체크리스트	45
	나. 평가기준별 검토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례 점검	50
V	FAQ	127



| 표 목 차 |

〈표 1〉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대상	3
〈표 2〉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진행절차	5
〈표 3〉 각 별지의 내용	6
〈표 4〉 평가기준 판정방법 및 적용여부 구분	7
〈표 5〉 평가지표의 판정방법 구분 및 기준 불만족 시 제시 내용	8
〈표 6〉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20
〈표 7〉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목차	24
〈표 8〉 “작성 가이드라인”과 “교육환경법 시행령” 등 간의 구성 비교	25
〈표 9〉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 메뉴 소개	34
〈표 10〉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지 메뉴 소개	35
〈표 11〉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평가현황)사업상세페이지>평가등록정보) 메뉴 소개	36
〈표 12〉 평가서 작성 목차	40
〈표 13〉 통풍 및 조망 확보 정도 평가 결과 작성 예	84
〈표 14〉 ○○교사동의 사업시행 전·후 일조 증감시간	86
〈표 15〉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지점 개수	87
〈표 16〉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 분석 결과	89
〈표 17〉 교사의 기준면적 및 산출과정의 예	91
〈표 18〉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99

| 그림목차 |

[그림 1]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	4
[그림 2]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사업명 작성 예	22
[그림 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명 작성 예	22
[그림 4]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요약표(작성 가이드라인 33~36p)	27
[그림 5] 평가진행처리 단계 변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 업로드 절차	30
[그림 6]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상세페이지 이동 및 확인 방법(평가현황)	31
[그림 7]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진행처리 단계 변경 방법	31

[그림 8]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교육환경평가서 확인 방법	33
[그림 9]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 등록 정보 확인 방법 ..	34
[그림 10]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지 정보 확인 방법	36
[그림 11]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대상학교 정보 확인 방법	37
[그림 1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비서류 확인 방법 1	38
[그림 1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비서류 확인 방법 2	39
[그림 14]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상세페이지 이동 및 확인 방법(사후교육환경평가)	41
[그림 15] 공원 및 녹지축 연계 평가 작성 사례(신설학교)	51
[그림 16] 공원 및 녹지축 연계 평가 작성 사례(기존학교)	52
[그림 17] 공공문화시설 연계성 평가 작성 사례(신설학교)	54
[그림 18] 공공문화시설 연계성 평가 작성 사례(기존학교)	55
[그림 19] 단위통학권 중심배치 평가 사례(신설학교)	57
[그림 20] 단위통학권 중심배치 평가 사례(기존학교)	57
[그림 21] 통학범위 평가 사례(신설학교)	59
[그림 22] 통학범위 평가 사례(기존학교)	60
[그림 23] 교통유발시설 인접성 평가 사례(신설학교)	61
[그림 24] 교통유발시설 인접성 평가 사례(기존학교)	62
[그림 25] 교지 인접도로 평가 사례(신설학교)	64
[그림 26] 교지 인접도로 평가 사례(기존학교)	65
[그림 27]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성 평가 작성 사례(신설학교)	66
[그림 28]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성 평가 작성 사례(기존학교)	68
[그림 29]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 확보 평가 사례(신설학교)	70
[그림 30]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 확보 평가 사례(기존학교)	71
[그림 31] 교문과 아파트출입구 거리 계획요소 평가 사례(신설학교)	72
[그림 32] 교문과 아파트출입구 거리 계획요소 평가 사례(기존학교)	73
[그림 33] 통학현황 분석 작성 사례1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75
[그림 34] 통학현황 분석 작성 사례2 (전라남도 화순군 삼천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75
[그림 35] 사업구역 주변 안전시설물 및 안전요원 배치 사례	76
[그림 36] 공사 중 사업지 인근 교육시설 통학로 확보계획 사례	77
[그림 37] 지붕형보행자도로 설치 대책 제시 사례	78
[그림 38] 절대보호구역 내 공사장 진출입구 설치 제한 및 절대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하여 공사차량 진출입 이동경로 제시 작성 사례	80

[그림 39] 타워크레인 운행반경 제시 사례	82
[그림 40] 일조분석 원본 도표	85
[그림 41] 방위별 기존침해지점 일조침해 판정방법	88
[그림 42] 지도를 이용한 표고 분석의 예시	93
[그림 43] 지도를 이용한 경사 분석의 예시	94
[그림 44] 풍수해 검토자료 예시1	95
[그림 45] 풍수해 검토자료 예시2	97
[그림 46] 토양측정지점 위치도 및 현장측정 사진 예시	98
[그림 47] 국가대기측정망 현황 조사 작성 사례	100
[그림 48] 국가대기측정망 조사 자료(월 측정) 작성 사례	100
[그림 49] 대기질 현장측정 지점 제시 자료 작성 사례	101
[그림 50] 문헌자료 출처 제시 및 대기질 측정지점도 작성 사례	101
[그림 51] 대기질 예측에 따른 가중농도 및 예측농도 결과, 영향범위 등농도곡선 작성 사례	103
[그림 52] 대기오염유발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사 결과 작성 사례 ·	104
[그림 53]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공사장 내 살수, 대기질 모니터링) 작성 사례	106
[그림 54] 학교용지 기준 악취 측정지점 및 측정 결과(시험성적서) 작성 사례	107
[그림 55]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민원 조사 현황 작성 사례	108
[그림 56] 사업지구 주변 교육시설 분포 평면도 및 단면도 사례	110
[그림 57] 공종별 투입장비 및 첨두시 덤프트럭 및 레미콘믹서 차량대수 산정 사례	111
[그림 58] 공사시 소음예측 사례(반자유 공간에서 점음원 거리 감쇠식 적용)	111
[그림 59] 발파소음·진동 예측식 및 사례	112
[그림 60] 실시간 소음 마이크로폰 설치 사례	114
[그림 61] 건물경사계와 균열측정계 설치 사례	115
[그림 62] 저감방안 총괄도 사례	116
[그림 6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 심의 결과 및 철거 확약서 사례	120
[그림 64] 학교주변(300m) 위험시설 현장조사 도면 및 사진 제시 사례	122
[그림 65] 기반시설 이용가능성 검토 자료 사례	123
[그림 66] 학교의 상·하수도 현황/계획 근거 자료 사례	124
[그림 67] 그 밖의 공공시설 도면	125

발 간 목 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이외에 업무 담당자를 위한 평가서 점검 및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담당자 중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의 비전공자가 평가서 확인 및 검토를 하는 데 교육환경평가 검토 가이드북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환경법」의 기준에 알맞은 교육환경평가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I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이해

I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이해

- 교육환경평가 제도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대상은 크게 <신설학교>와 <기존학교>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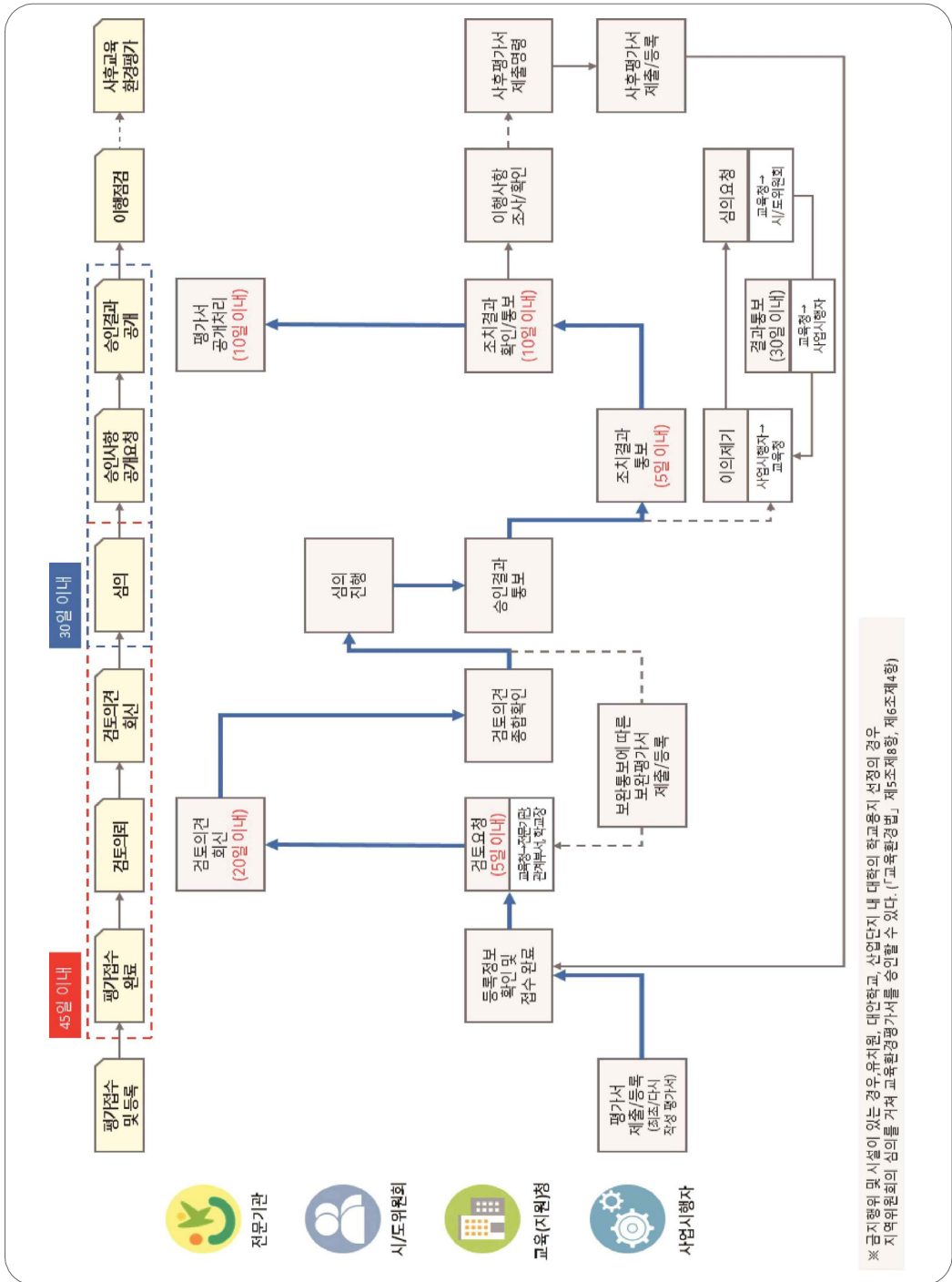
〈표 1〉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대상

구분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주체	(1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 (3호) 개발사업시행자	(4호)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각종학교 ※ 작성 제외 : 정보공개 제외 학교 ¹⁾ ※ 작성 제외 : 정보공개 제외 학교 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각종학교 ※ 작성 제외 : 정보공개 제외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 상실 시, 정비사업 ²⁾ 에 한하여 대학
기타	기존학교 이전용지 포함	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를 추진하는 경우(학교설립예정지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 2) 단, 정비사업의 규모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평가는 평가접수 및 등록부터 사후교육환경평가까지 총 9개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그림 1], <표 2>와 같습니다.



[그림 1]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

〈표 2〉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진행절차

구분	진행절차	설명
①	평가접수 및 등록	사업시행자는 교육(지원)청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eeis.schoolkeepa.or.kr/)에 교육환경평가서와 함께 별지 1호(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별지 2호(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평가접수 완료	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는 승인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https://epss.schoolkeepa.or.kr/mgr/)을 통해 운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단,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교육(지원)청의 승인신청 접수 통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 별지 3호(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검토의뢰	교육(지원)청은 전문기관에 접수 완료된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④	전문기관 검토의견 회신	전문기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및 운영기관은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에 검토의견을 입력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확인한다.
⑤	심의(심의진행 및 심의결과 통보)	교육(지원)청에서는 종합된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교육(지원)청은 심의결과를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보완을 진행한다.
⑥	승인사항 공개요청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별지 4호(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와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별지 4호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⑦	승인결과 공개	교육(지원)청은 운영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에게 별지 5호(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 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지원)청은 별지 5호를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시행자 등이 별지 4호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은 별지 5호를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5호의 내용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비식별 처리하고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이행점검 (「교육환경법」 제7조제1항~제3항)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또는 권고사항의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계획 및 점검 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사후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법」 제7조제4항~제5항)	이행점검 결과 권고사항 미이행, 예상하지 못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나타난 경우 교육(지원)청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 3〉 각 별지의 내용

별지		각 별지의 내용
별지 1호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해당 서식은 평가접수 및 등록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내의 사업시행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2호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	해당 서식은 평가접수 및 등록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3호	교육환경평가 정보 전산등록 완료 확인서	해당 서식은 평가접수 완료 단계에서 운영기관이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시행자 및 교육(지원)청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및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정보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4호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해당 서식은 심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특정 사유를 근거로 비공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5호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	해당 서식은 승인결과 공개 단계에서 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앞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별지 4호를 검토하여 공개 요청 범위 등을 특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6호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 자료요청서	해당 서식은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자 (이하 전산자료 신청자)가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 신청자의 정보와 신청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7호	운영기관 보관 자료 제공대장	해당 서식은 운영기관이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자료요청과 자료제공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지 8호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 자료 사용 보안서약서	해당 서식은 전산자료 신청자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 신청자는 제공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평가기준은 크게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은 27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 평가유형(신설학교/기존학교)에 따른 판정방법, 평가기준 적용여부는 〈표 4〉와 같습니다.
- 판정 방법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부합평가로 구분되며, 각 판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표 5〉와 같습니다.

〈표 4〉 평가기준 판정방법 및 적용여부 구분

구분	항목	기준	판정 방법	적용여부		
				신설 평가	기존 평가	
위치	일반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상대	○	√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인접성	상대	○	√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절대	○	교육감 협의	
	통학범위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상대	○	√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상대	○	√	
	통학안전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부합	○	○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부합	○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상대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상대	○	√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상대	○	√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부합	○	○	
	통풍·조망·일조	통풍 및 조망 확보	상대	○	√	
		교지 일조시간 확보	절대	○	○	
	크기 및 외형	교지면적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절대	○	○
		교지형태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부합	○	교육감 협의
지형 및 토양 환경	지형 및 경사도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부합	○	교육감 협의	
	풍수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부합	○	교육감 협의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부합	○	교육감 협의	
	토양환경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절대	○	교육감 협의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절대	○	○		
대기 환경	대기질	대기 환경기준 준수	절대	○	○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절대	○	○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절대	○	○	

구분	항목	기준	판정 방법	적용여부	
				신설 평가	기존 평가
주변 유해 환경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절대	○	○
	위험시설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시설 제한	부합	○	○
공공 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부합	○	○
	그 밖의 공공시설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가능성	부합	○	○

※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 및 기준별 적용여부는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표 1]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제2조 관련)을 근거로 작성함

(v) : 사업시행자 등은 해당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시하라는 검토의견으로 회신될 수 있음

〈표 5〉 평가지표의 판정방법 구분 및 기준 불만족 시 제시 내용

구분	방법	내용	
		신설학교	기존학교
절대평가	적합	-	
	부적합	학교용지 위치 변경	사업계획 변경 우선 검토 또는 조치계획 제시
상대평가	보통(3) 이상	-	
	미흡(2) 이하	학교용지 위치 변경 우선 검토 또는 대안 제시	조치계획 제시(v)
부합평가	부합	-	
	미부합	학교용지 위치 변경 우선 검토 또는 대안 제시	조치계획 제시

(v) : 사업시행자 등은 특정 항목(〈표 4〉참고)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 등의 검토기관이 조치계획을 제시하라는 검토의견으로 회신될 수 있음

II

가이드북의 활용 방법

II 가이드북의 활용 방법

- 본 가이드북은 평가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제시 후,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각 항목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전반적인 목차 구성과 평가기준 별 내용에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찾아봐야 하는지를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체크리스트는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과 ‘평가기준별 검토’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 3장의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는 ‘법적 근거’, ‘제도운영(시스템 포함)’, ‘보완/다시 작성, 사후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내용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기준 만족 여부(O/X)를 체크하고, 불만족으로 체크될 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전 검토시에 불만족으로 체크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협의 요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 프로세스는 향후 구현할 예정입니다.
- 4장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는 평가기준과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 혹은 준수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과 마찬가지로 각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기준 만족 여부(O/X)를 체크하고, 불만족으로 체크될 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검토의뢰, 질의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평가유형(신설학교/기존학교)에 따라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검토항목

- 가. 제도 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
- 나. 제도 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례 점검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검토항목

가. 제도 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

사업명 :

검토일 : 2023년 00월 00일, 검토자 : 소속 : 직급 : 성명 :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법적 근거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 유형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에 해당하는가? (학교 유형 및 이격 거리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승인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검토 요청 공문에 등록된 사업명이 통일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명에 대표지번호 함께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역(BL) 단위별로 각각의 교육환경평가서가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평가서에 조사결과 요약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평가서 항목별 기재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평가진행처리 단계에 맞추어 교육환경평가서가 업로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평가서가 오등록된 경우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인’, ‘대행기관’, ‘평가유형’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지’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학교’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토지이용계획도, 종합개선안도, 사업지경계를 모두 등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를 모두 등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 다시 작성, 사후 평가	(보완 작성인 경우) 관계기관별 검토의견과 그에 대한 보완내용, 반영여부 등이 작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시 작성 또는 사후평가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변경내용, 종합평가, 조치계획 등이 비교 작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후평가인 경우) 심의결과가 교육환경평가서에 첨부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보완 작성 평가서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후 관계부서 또는 전문기관 등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사항 발생 시 작성하는 평가서를 뜻함
- * 다시 작성 평가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학교용지 위치 변경, 학교용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 증감, 학교 용지 인접 기반시설 등의 용도 변경), 변경 사유와 그 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하는 평가서를 뜻함
- * 사후평가서는 평가 승인 이후 승인 내용 및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 피해 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의 명령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는 평가서를 뜻함

나. 제도 운영 및 작성일반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례 점검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법적 근거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 유형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대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필수 검토 자료

- ☑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5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사업 명칭 예: ○○학교 설립 등
-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사업 명칭 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지구 내 학교 신설 등
- (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사업 명칭 예: ○○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사업
- (4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사업 명칭 예: ○○ 재개발 정비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 등
- (5호)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사업 명칭 예: ○○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거복합 신축공사 등
 - ※ “사업 명칭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정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검토시 주의사항

- ☑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는 “신설학교 평가” 또는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평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5호는 “기존학교 평가” 또는 “운영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평가”로 불리고 있음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법적 근거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에 해당하는가? (학교 유형 및 이격 거리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는 “학교 유형”과 “이격 거리”를 고려하여야 함
- ☑ 「교육환경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속하는 사업은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 또한,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육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며, 대상 학교에 누락이 있을 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보완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필수 검토 자료

- ☑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의 “학교 유형”에 대해 「교육환경법」제2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조(정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나목)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 (다목)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 (라목)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
- ☑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의 “이격 거리”에 대해 「교육환경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
 - 「교육환경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이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이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검토시 주의사항

[교육환경평가 적용 제외 학교]

-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적용 제외 학교 목록은 아래와 같음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폐교·이전 등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 폐교·이전이 “예정” 되어 있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 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그 근거 문서를 교육환경평가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법적 근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기한)은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보완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음

<표 6>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구분	주체*	제출기한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구분	주체*	제출기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른 구분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승인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검토 요청 공문에 등록된 사업명이 통일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효율적인 사업정보 조회 및 활용, 사후 관리 등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는 사업명은 필수적으로 통일하여야 함
- ☑ 사업명 통일을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의 사업명이 동일한지 확인([그림 2])
 - 제출 서류에 기재한 사업명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업명이 동일한지 확인([그림 3])
 -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확인 방법은 [그림 3] 참고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제출된 사업명*에 맞추어 검토 요청 공문을 작성 및 발송
 - * 대표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정 요청 필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1900.00.00	
	주소 ○○시 ○○동 ...	전화번호 000-0000-0000	
사업 현황	사업명 ○○시 ○○동(00-00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위치 ○○시 ○○동 00-00번지		
	면적 100,000㎡		

[그림 2]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사업명 작성 예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교육환경평가정보관리시스템'. The left sidebar has a menu with '평가현황'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평가 등록 정보' and contains a form with several fields. The '사업명' fiel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contains the text '○○시 ○○동(00-00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Other fields include '사업자 구분', '법인번호', '소재지 (시행시)', '사업구분', '사업기간', '사업면적(㎡)', and '사업지'. There are '찾기' (Search) buttons next to several fields.

[그림 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명 작성 예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사업명에 대표지번호 함께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계속 누적되는 사업정보의 원활한 이력 관리를 위해 사업명에 대표 지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승인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업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명에 대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예) ○○시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시 ○○동(00-00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검토시 주의사항

- ☑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은 교육환경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명이 유사하여 원활한 이력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경우로, 해당 경우에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음
- ☑ 교육환경평가 당시 대표 지번이 미부여된 사업(도시개발사업, 택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해당 체크리스트는 적용 불가함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구역(BL) 단위별로 각각의 교육환경평가서가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인접한 사업 간의 복합영향*을 고려한 객관적인 교육환경평가를 위해 구역(BL) 단위별로 각각 평가서를 작성해야 함

* 2개의 구역(BL)을 하나의 부지로 평가하는 것과 2개의 구역(BL)을 각각 평가하는 것은 사업지와 학교(시설예정지)경계 간의 거리 산정, 통학로 설정, 일조 분석, 대기질과 소음 및 진동 예측값 등에 차이를 유발함

-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인접한 구역(BL)에서 같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평가서는 각 구역(BL) 단위로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서로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안내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서로 작성 및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평가서의 재작성을 요청할 것을 권장함

- 예) (1개로 통합) ○○지구 1~3BL 공동주택 개발사업 → (3개로 구분)○○지구 1BL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구 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구 3BL 공동주택 개발사업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부실작성 방지, 평가내용의 충실성 확보, 평가수준의 상향 평준화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2023.02.)”(이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
- ☑ 따라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목차와 내용이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보완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필수 검토 자료

- ☑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는 I. 요약문, II. 사업개요, III. 평가대상, 평가기준 설정, IV. 평가기준별 영향 예측 및 조치계획, V. 종합평가, VI. 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별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음

<표 7>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목차

구분	설명
I. 요약문	사업내용, 종합평가(평가기준별 조사 결과, 판정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함
II.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목적, 사업추진경과·계획, 사업내용, 실시근거를 요약하여 작성함
III. 평가대상, 평가기준 설정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정보, 평가기준 설정의 근거(관련 조항 등)를 작성함
IV. 평가기준별 영향 예측 및 조치계획	평가기준별 조사항목, 범위, 방법, 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 근거 및 조치계획을 작성함
V. 종합평가	종합평가(평가기준별 판정 결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저감방안 등) 및 실행계획을 작성함
VI. 부록	교육환경평가 대행자 현황, 각종 협약서, 측정 기록부, 각종 데이터 원본값 등을 작성함

■ 검토시 주의사항

- ☑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 중 III. 평가대상, 평가기준 설정은 앞(II. 사업개요) 혹은 뒤(IV. 평가기준별 영향 예측 및 조치계획)의 목차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작성 가이드라인” 상의 목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3]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비교하면 <표 8>과 같음

〈표 8〉 “작성 가이드라인”과 “「교육환경법 시행령」 등” 간의 구성 비교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3]	
I. 요약문	요약문	사업의 내용 종합평가 조치계획
II. 사업개요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사업내용
III. 평가대상, 평가기준 설정		실시근거 대상 설정
IV. 평가기준별 영향 예측 및 조치계획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위치 크기 및 외형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조치계획 종합 조치계획 시행주체 및 시기
V. 종합평가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학교별 평가
VI. 부록	부록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평가서에 조사결과 요약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조사결과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 가이드라인”에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요약표> 양식을 제시 및 배포하고 있음
- ☑ 따라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요약문-종합평가에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요약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해당 표의 추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필수 검토 자료

- ☑ 신설학교의 경우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요약표>는 위치(일반사항, 통학범위, 통학안전, 일조), 대기환경(대기질, 소음및진동), 주변유해환경(금지행위 및 시설), 크게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요약표 양식이 제시되어 있음
 - ☑ 기존학교의 경우 위치(일반사항, 통학범위, 통학안전, 일조), 대기환경(대기질, 소음 및 진동), 크게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요약표 양식이 제시되어 있음
- ※ 관련 양식은 신설학교 작성 가이드라인(33~36p), 기존학교 작성 가이드라인(33~36p)을 참고 바람

■ 검토시 주의사항

- ☑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모든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요약표 양식의 제시 여부만 파악하여도 충분함

구분	항목	평가 기준	조사요소	결과값			작성 위치			
				*학교명						
				사업 전	사업 후					
일반 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이격거리(m)	공원 및 녹지 종류	유(종류명) / 무	유(종류명) / 무	(p.00)				
			이격거리(m)	00	00	(p.00)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인접성	시설 또는 용지 종류	시설 또는 용지 종류	유(종류명) / 무	유(종류명) / 무	(p.00)				
			이격거리(m)	00	00	(p.00)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계획세대수(세대)	계획세대수(세대)	00	00	(p.00)				
			실질계획	-	분산배치 () 학교설립 ()	(p.00)				
		관할 교육청 계획 부합	관할 교육청 계획 부합	-	부합 () / 미부합 ()	(p.00)				
			교차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m)	00	00	(p.00)				
	통학 범위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통학도보거리(m)	통학도보거리(m)	00	00	(p.00)			
				통학소요시간(분)	00	00	(p.00)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통학소요거리(m)	통학소요거리(m)	00	00	(p.00)				
			통학소요시간(분)	00	00	(p.00)				
고등유발시설과 이격		이격거리(m)	이격거리(m)	유(종류명) / 무	유(종류명) / 무	(p.00)				
	구분		주 보 소 간선 간선	집선 국지	주 보 소 간선 간선	집선 국지	(p.00)			
통학 안전	집선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도로 기능	구분	주 보 소 간선 간선	집선 국지	주 보 소 간선 간선	집선 국지	(p.00)		
			동측	O/X	O/X	O/X	O/X	O/X	(p.00)	
			서측	O/X	O/X	O/X	O/X	O/X	(p.00)	
			남측	O/X	O/X	O/X	O/X	O/X	(p.00)	
		북측	O/X	O/X	O/X	O/X	O/X	(p.00)		
		도로폭(m)	00	00	00	00	00	00	(p.00)	
		보도폭(m) (편측기준)	보도폭(m)	00	00	00	00	00	00	(p.00)
			차로개수(개)	00	00	00	00	00	00	(p.00)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횡단 횡단횡수(회)	횡단 횡단횡수(회)	00	00	00	00	(p.00)	
				4차로 이상 도로	00	00	00	00	(p.00)	

구분	항목	기준	조사요소	결과값			작성 위치	
				사업 전	사업 후			
대기 환경	대기질	대기 환경기준 준수	배경농도 확인	최소	평균	최대	(p.00)	
				현장 측정	PM ₁₀ [µg/m³]	00.00		00.00
				PM _{2.5} [µg/m³]	00.00	00.00	00.00	(p.00)
					NO ₂ [ppm]	00.00	00.00	00.00
			먼지 인형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p.00)
					NO ₂ [ppm]	00.00	00.00	00.00
			도시대기 측정소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p.00)
					PM _{2.5} [µg/m³]	00.00	00.00	00.00
				NO ₂ [ppm]	00.00	00.00	00.00	(p.00)
					연평균 예측	지검방안 적용 전	지검방안 적용 후	지검방안 적용 전
	대기질 기준농도 ¹⁾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00.00	(p.00)	
			00.00	00.00	00.00	00.00		
	대기질 예측농도 ²⁾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00.00	(p.00)	
			00.00	00.00	00.00	00.00		
	NO ₂ [ppm]	00.00	00.00	00.00	00.00	00.00	(p.00)	
			00.00	00.00	00.00	00.00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소음도 예측	지검방안		결과			
			세류 세차시설(개)		00	(p.00)		
			살수		O / X	(p.00)		
			가설방음벽 길이(m)		00	(p.00)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지 () 개소, 학교 () 개소	(p.00)		
			NO ₂ 지검방안		O / X	(p.00)		
			*학교명		사업 전	사업 후		

구분	항목	기준	조사요소	결과값			작성 위치	
				사업 전	사업 후			
일조	교차 일조시간 확보	교차 일조시간 확보	횡단횡수(회)	연 계 ()	연 계 ()	(p.0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연계	연 계 ()	연 계 ()	(p.00)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유 보도폭 확보	연 계 ()	연 계 ()	(p.00)		
			2m 이상 유유 보도폭 확보	확보 () / 미확보 ()	확보 () / 미확보 ()	(p.00)		
			교문과 이파드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단지출입구와 교문 이격거리(m)	00	00	(p.00)	
			공사차량 진출입구(개)	공사차량 진출입구(개)	00	00	(p.00)	
				공사차량 이동경로와 주 통학로(학교 인접 통학로) 상충	상충 () / 미상충 ()	상충 () / 미상충 ()	(p.00)	
			공사차량 인한 통학안전 확보	통학소요시간대 집회 시간대	통학소요시간대	통학소요시간대	적용 () / 미적용 ()	(p.00)
					하교시간	하교시간	적용 () / 미적용 ()	(p.00)
				인접요원(명)	인접요원(명)	00	00	(p.00)
공사인사(내안)현부지원(개)	00	00			(p.00)			
	통학로 안전행스	통학로 안전행스	적용 () / 미적용 ()	적용 () / 미적용 ()	(p.00)			
		지붕형 보행통로	적용 () / 미적용 ()	적용 () / 미적용 ()	(p.00)			
	통학 보행공간 2m 이상 확보	통학 보행공간 2m 이상 확보	적용 () / 미적용 ()	적용 () / 미적용 ()	(p.00)			
		일시성도로, 우회도로 확보	적용 () / 미적용 ()	적용 () / 미적용 ()	(p.00)			
	자체 하역공간 확보	자체 하역공간 확보	적용 () / 미적용 ()	적용 () / 미적용 ()	(p.00)			
		차량 대피공간, 주차공간 확보	적용 () / 미적용 ()	적용 () / 미적용 ()	(p.00)			
	CCTV 설치대수(대)	CCTV 설치대수(대)	00	00	(p.00)			
		타워크래인 운영대수(대)	00	00	(p.00)			
일조	교차 일조시간 확보	교차 일조시간 확보	일조분석결과		*학교명			
			사업 전		사업 후			
			예측지점 개수(개)	00	00	(p.00)		
			기준 만족 개수(개)	00	00	(p.00)		
			기준 불만족 개수(개)	00	00	(p.00)		
			총일조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준형제지점 개수(개)	00	00	(p.00)		
			사업시행 이후 기준형제지점의 총일조시간 감소하는 지점의 개수(개)		00	(p.00)		

구분	항목	기준	조사요소	결과값			작성 위치	
				사업 전	사업 후			
대기 환경	대기질	대기질 기준 준수	배경농도 확인	최소	평균	최대	(p.00)	
				현장 측정	PM ₁₀ [µg/m³]	00.00		00.00
				PM _{2.5} [µg/m³]	00.00	00.00	00.00	(p.00)
					NO ₂ [ppm]	00.00	00.00	00.00
			먼지 인형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p.00)
					NO ₂ [ppm]	00.00	00.00	00.00
			도시대기 측정소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p.00)
					PM _{2.5} [µg/m³]	00.00	00.00	00.00
				NO ₂ [ppm]	00.00	00.00	00.00	(p.00)
					연평균 예측	지검방안 적용 전	지검방안 적용 후	지검방안 적용 전
	대기질 기준농도 ¹⁾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00.00	(p.00)	
			00.00	00.00	00.00	00.00		
	대기질 예측농도 ²⁾	PM ₁₀ [µg/m³]	00.00	00.00	00.00	00.00	(p.00)	
			00.00	00.00	00.00	00.00		
	NO ₂ [ppm]	00.00	00.00	00.00	00.00	00.00	(p.00)	
			00.00	00.00	00.00	00.00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소음도 예측	지검방안		결과			
			세류 세차시설(개)		00	(p.00)		
			살수		O / X	(p.00)		
			가설방음벽 길이(m)		00	(p.00)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지 () 개소, 학교 () 개소	(p.00)		
			NO ₂ 지검방안		O / X	(p.00)		
			*학교명		사업 전	사업 후		

[그림 4]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요약표(작성 가이드라인 33~36p)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평가서 항목별 기재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육환경평가는 27개 세부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하나, 기존학교 평가의 6개 기준의 경우 교육감 협의에 의해 평가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8개 기준의 경우 조치계획 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 따라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위와 같은 경우에 평가기준 미적용, 조치계획 미제시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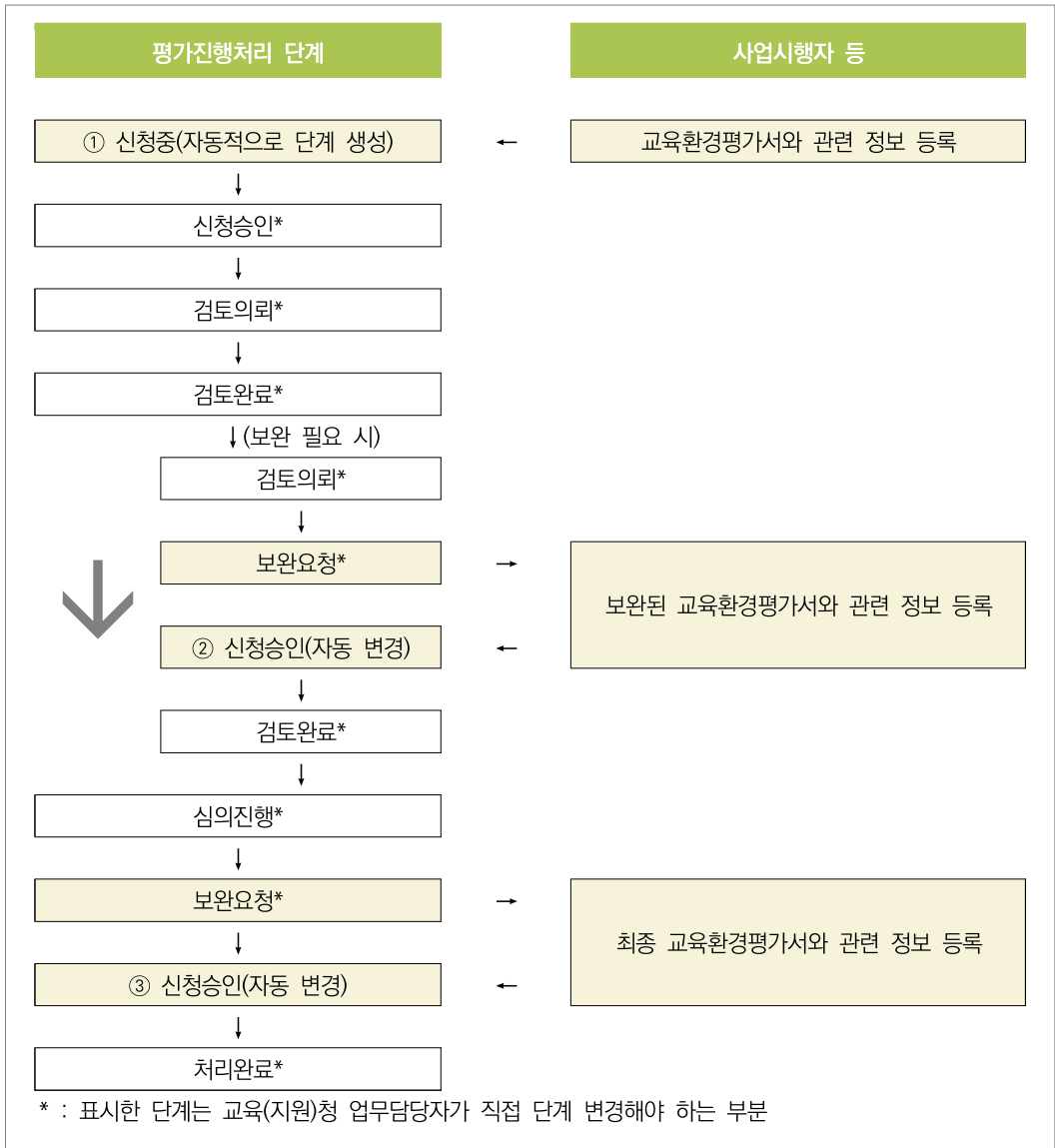
■ 필수 검토 자료

- ☑ 교육환경평가서 내에 교육감 협의에 의한 평가기준 미적용, 조치계획 미제시에 대한 사유 및 근거 제시 여부
 - 교육감 협의에 의해 평가기준 적용 여부 결정이 가능한 기존학교 평가의 6개 기준
 -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 조치계획 제시 생략이 가능한 기존학교 평가의 8개 기준
 -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인접성
 -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 통풍 및 조망 확보
- ※ 전체 내용은 "작성 가이드라인", 특히 본 책 8p에 제시된 <평가기준 판정방법 및 적용여부 구분>을 참고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평가진행처리 단계에 맞추어 교육환경평가서가 업로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기반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의 평가진행처리 단계 변경
 -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 확인
- ☑ 교육(지원)청이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변경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등이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오등록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 평가진행처리 단계 변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의 업로드 절차는 [그림 5]와 같음
 - ① 사업시행자 등이 등록한 (최초)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 확인
 - ② 사업시행자 등이 등록한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 확인
 - ③ 사업시행자 등이 등록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 확인
 - *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심의결과에 따라, 특히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에 발생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공개용 교육환경평가서를 뜻함
 - ①~③에 따라 확인한 결과, 사업시행자 등이 자료를 오등록한 경우,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임시저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요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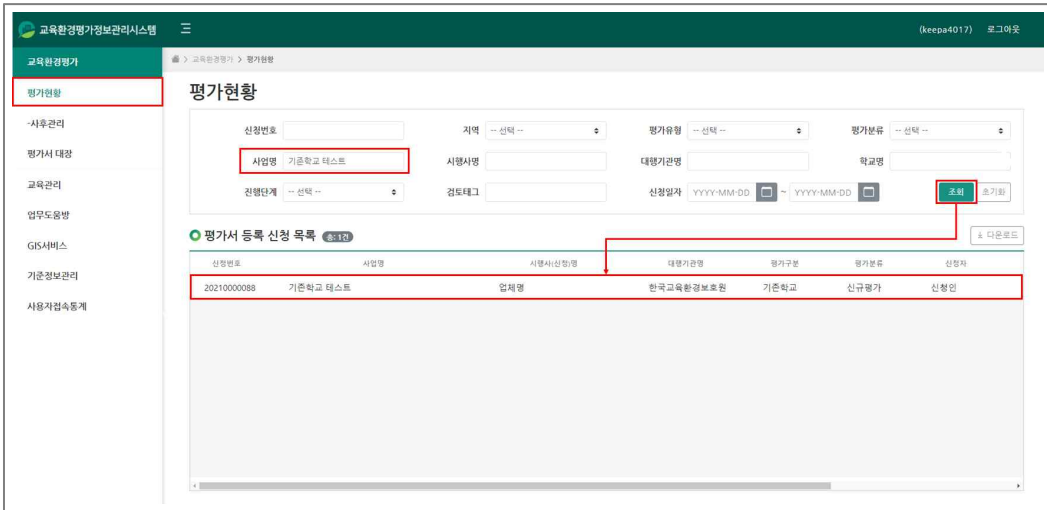
[그림 5] 평가진행처리 단계 변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 업로드 절차

■ 필수 검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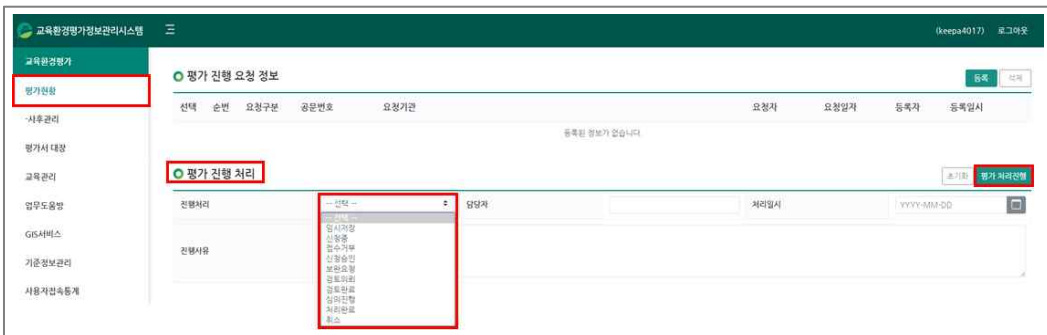
-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그림 6])
 - 스크롤을 내려 사업 상세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평가 진행 처리]의 '진행처리'에서 알맞은 단계 선택

- 담당자, 처리일시, 진행사유를 차례로 입력한 후, “평가 처리진행” 버튼 클릭하면 완료([그림 7])

※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안내서(2023.03.)” 참고



[그림 6]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상세페이지 이동 및 확인 방법(평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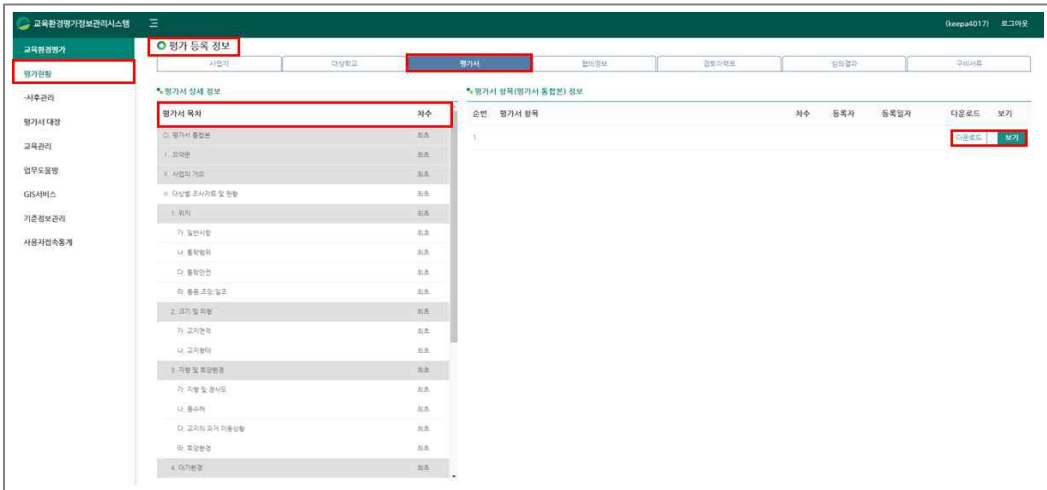


[그림 7]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진행처리 단계 변경 방법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평가서가 오등록된 경우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기반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확인되어야 함. 이때, 교육환경평가서가 오등록된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 교육환경평가서가 오등록된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평가서 목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분할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타 사업의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등록한 경우
 - 이전 차수의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등록한 경우
 - 승인 신청서 접수 이전 협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등록한 경우
- ☑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교육환경평가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 스크롤을 내려 사업 상세페이지 가장 하단 [평가 등록 정보]의 [평가서] 탭 클릭
 - 교육환경평가서를 ‘평가서 목차’에 따라 다운로드/보기 버튼 클릭하여 정보 확인 가능
(그림 8)



[그림 8]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교육환경평가서 확인 방법

■ 검토시 주의사항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운영이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사업시행자와 교육(지원)청 간에 시스템 이외의 방법(공문, 메일 등)으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불가피하게 서면, 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자료(교육환경평가서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여야 함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인', '대행기관', '평가유형'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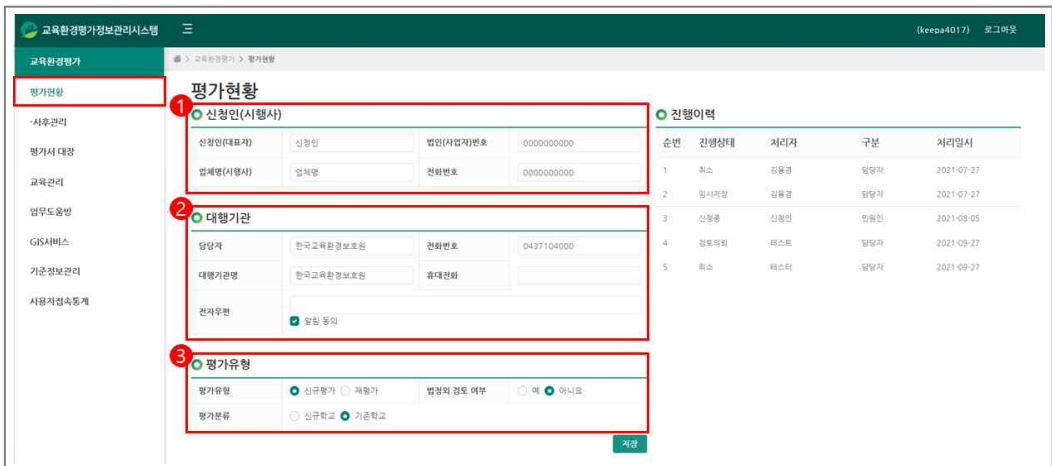
- ☑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에 대한 정보는 <표 9>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가 오등록된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표 9〉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 메뉴 소개

메뉴	구분	설명
신청인 (시행사)	신청인(대표자)	- 사업시행사 대표자 이름
	업체명(시행사)	- 사업시행사(업체) 상호
	법인(사업자)번호	- 사업시행사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업시행사 대표 연락 가능 번호
대행기관	담당자	- 작성대행기관 담당자 이름
	대행기관명	- 작성대행기관 상호
	전화번호	- 작성대행기관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	- 작성대행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알림동의)	- 대행기관 담당자 전자우편 및 진행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메일 수신동의 설정
평가유형	평가유형	- 신규평가/재평가(심의 불승인 후 재접수) 구분
	평가분류	- 신규학교(학교신설) 또는 기존학교(학교인근 개발사업) 구분
	법정의 검토 여부	- 등록된 사업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체크

☑ 사업시행사 등이 입력한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 사업 상세페이지 가장 상단을 보면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 순으로 정보 확인 가능(그림 9)



〈그림 9〉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신청인(시행사), 대행기관, 평가유형 등록 정보 확인 방법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지'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사업지 정보는 <표 10>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가 오등록된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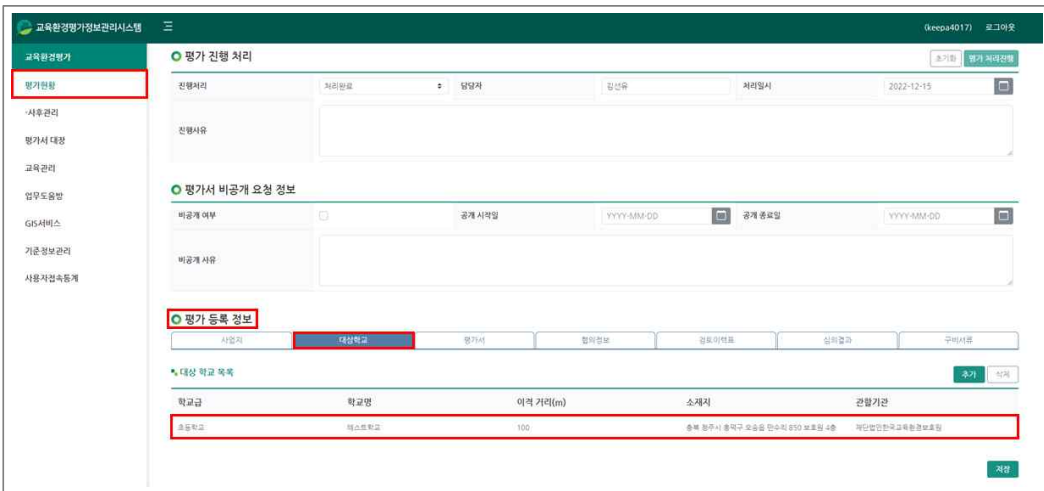
<표 10>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지 메뉴 소개

메뉴	구분	설명
사업지	사업명	-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의 등록 당시 사업 명칭
	시행사 구분	- 사업시행자의 유형(건설업체, 조합 등)
	시행사명	- 사업시행사(업체) 상호 또는 이름
	법인번호	- 사업시행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사업시행자 대표자 이름
	소재지(시행사)	- 사업시행사(업체)의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구분	- 개발사업의 유형 선택
	사업기간	- 사업 시행~완료 기간
	수용인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총 수용인구
	사업면적	- 사업대상지 대지면적
	승인기관	- 최종 인·허가 행정청
	사업지	- 사업대상지 주소

- ☑ 사업시행자 등이 입력한 사업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 스크롤을 내려 사업 상세페이지 가장 하단 [평가 등록 정보]의 [사업지] 탭 클릭하여 보면 정보 확인 가능([그림 10])

필수 검토 자료

- ☑ 사업시행자 등이 입력한 대상학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 스크롤을 내려 사업 상세페이지 가장 하단 [평가 등록 정보]의 [대상학교] 탭 클릭하면 정보 확인 가능([그림 11])



[그림 11]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대상학교 정보 확인 방법

검토시 주의사항

- ☑ 교육환경평가서에 작성된 혹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학교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알리미”에 접속 및 해당 학교 조회,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학교알리미 주소 : <https://www.schoolinfo.go.kr>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토지이용계획도, 종합개선안도, 사업지경계를 모두 등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토지이용계획도, 종합개선안도, 사업지경계는 교육환경평가서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필수 자료로서, 해당 정보가 오등록된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 각종 도면이 오등록된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타 사업의 도면을 등록한 경우
 - 등록한 도면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 ☑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각종 도면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 스크롤을 내려 사업 상세페이지 가장 하단 [평가 등록 정보의 [구비서류] 탭 클릭
 -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정보 확인 가능
- ※ “파일 선택”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시,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파일이 삭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그림 1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비서류 확인 방법 1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제도 운영 (시스템 포함)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를 모두 등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는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개인 정보 및 사업 정보의 보호를 위해 추가된 문서로서, 사업시행자는 위 3개의 문서를 압축파일로 묶어서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정보가 오등록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 각종 서류가 오등록된 경우를 예상하면 아래와 같음
 - 타 사업의 서류를 등록한 경우
 - 서류 내용이 부실 작성되어 있는 경우
 - 등록한 서류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 ☑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평가현황>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 스크롤을 내려 사업 상세페이지 가장 하단 [평가 등록 정보]의 [구비서류] 탭 클릭
 -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정보 확인 가능

※ “파일 선택”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시,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파일이 삭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그림 1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비서류 확인 방법 2

■ 검토시 주의사항

-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를 등록 및 확인하는 기능은 현재 시스템에서 미구현되어 있으므로, 해당 체크리스트는 시스템 기능 개선 이후에 적용 가능함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보완/ 다시 작성, 사후 평가	(보완 작성인 경우) 관계기관별 검토의견과 그에 대한 보완내용, 반영여부 등이 작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시 작성 또는 사후평가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변경내용, 종합평가, 조치계획 등이 비교 작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위의 체크리스트는 교육환경평가서의 보완 작성 혹은 재(다시)작성, 사후평가인 경우에 활용 되는 것으로서, 해당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 12>와 같은 목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 ☑ 따라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목차와 내용이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 환경평가서의 보완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표 12> 평가서 작성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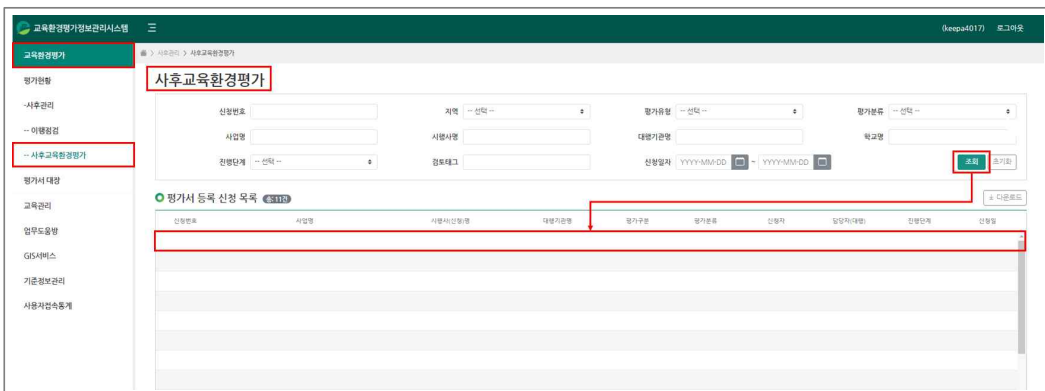
구분	설명	
	보완 작성인 경우	다시작성(재작성) 또는 사후평가
I. 검토의견 및 반영사항 /사업계획 등 변경 내용	검토의견 및 반영사항 관계기관별 검토의견과 그에 대한 보완내용, 반영여부 등을 작성함 <보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 등 변경 내용 변경 전·후의 종합평가(평가기준별 판정 결과)를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계획(저감방안 등)을 보완하여 작성함
II. 요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종합평가(평가기준별 조사 결과, 판정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함 • 사업내용, 평가기준별 조사결과, 평가기준별 판정 결과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권장함 	사업내용 등의 변경내용을 전·후 비교표로 제시하여야 함
III.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목적, 사업추진경과·계획, 사업내용, 실시근거를 요약하여 작성함 보완 작성인 경우, 사업추진경과·계획에 이전의 교육환경평가서 접수일을 기재할 것을 권장함	다시 작성인 경우, 사업추진경과·계획에 이전의 교육환경평가서 접수일과 심의결과를 기재할 것을 권장함
IV. 평가대상, 평가기준 설정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정보, 평가기준 설정의 근거(관련 조항 등)를 작성함	
V. 평가기준별 영향 예측 및 조치계획	평가기준별 조사항목, 범위, 방법, 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 근거 및 조치계획을 작성함	

구분	설명	
	보완 작성인 경우	다시작성(재작성) 또는 사후평가
VI.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평가기준별 판정 결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저감방안 등) 및 실행계획을 작성함 • 종합평가(평가기준별 판정 결과)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권장함 • 평가대상 학교가 여러 개인 경우 학교별로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지 말 것을 권장함 	
VII. 부록	교육환경평가 대행자 현황, 각종 협약서, 측정 기록부, 각종 데이터 원본값 등을 작성함	

구분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만족 여부	
		O	X
보완/다시 작성, 사후 평가	(사후평가인 경우) 심의결과가 교육환경평가서에 첨부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이전의 심의결과와 권고사항, 사후교육환경평가가 접수된 배경 파악이 정확한 검토에 중요한 요소임. 이에 사업시행자 등은 I.사업계획 등 변경 내용을 작성할 때, 심의결과를 기재하거나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정보가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으로 부터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
- ☑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교육환경평가>사후관리>사후교육환경평가>해당 사업 조회>해당 사업 상세페이지로 이동



[그림 14]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상세페이지 이동 및 확인 방법(사후교육환경평가)

IV

평가기준별 검토항목

- 가. 평가기준별 검토 체크리스트
- 나. 평가기준별 검토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례 점검

IV

평가기준별 검토항목

가. 평가기준별 검토 체크리스트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	×
위치	일반 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신설	학교 용지와 공원녹지의 연결 정도가 100m 이하인가?	토지이용계획도, 공원녹지 기본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존	학교 용지와 인근 공원녹지 현황, 사업구역 내 공원시설 계획을 조사 하였는가?	평가대상 학교 인접 공원 및 녹지 현황 - 연관 자료 : 공원녹지 기본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 문화 시설 인접성	신설	학교 용지가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200m 이하로 배치 되어 있는가?	토지이용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존	학교 인근 공공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관할 지자체(시군구) 공공문화 시설 현황 - 연관 자료 : 시군구 홈페이지 내 공공문화시설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생 및 학생 배치 계획 부합성	공통	해당사업지구 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 하는가?	해당 학교 (평가대상/, 배치예정 학교) 학구도 학생 배치 계획 협의 여부(협의 의견, 공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 범위	공통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통학권 중심으로부터 학교 경계간 거리가 150m 이하인가?	(초) 도보 통학거리 조사결과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지로부터 학교(교육시설)까지의 이격거리가 초등학교 1,000m 이하, 중,고등학교 2,400m 이하 인가?			(중, 고) 대중교통 승차차 지점으로 부터 통학 소요 시간, 통학 경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 안전	공통	학교 인접도로 및 연결도로에 교통 유발시설이 존재하지 않는가?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 전후 교통량 변화 - 연관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영향평가, 도로서비스 수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학교 인접도로가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되어 있는가?	학교 인접도로 현황 - 연관자료 : 토지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로 현황도시관리 계획 도로결정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로가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 도로를 1회 미만 횡단하는가?	학교~사업지 통학로 횡단성 평가 결과 - 연관자료: 교통종합개선안도, 교통처리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었는가?	학교~사업지 도로 연계현황 - 연관자료 : 교통종합개선도/ 교통처리계획도 도로 단면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요소 중 만족 개수가 2개 이상이고, 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를 최소화하였는가?	사업구역 보행출입구와 학교 교문 위치관계 도면 - 연관자료 : 지구단위계획 차량 진출입 결정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로변에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 안전표지판, 안전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였는가?	공사차량 진출입 경로, 통학경로, 안전요원,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존	공사로 인하여 통학로 단절, 폐쇄가 발생하였는가?	통학현황조사 도표, 공사차량 진출입 도면, 공사차량 이동경로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절대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하여 공사장 출입구를 계획하였는가?	공사장 출입구 설치계획 도면, 절대보호구역과 공사장 출입구 위치관계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 운영 시간대를 제시하였는가?	등하교시간대를 고려한 공사차량 진출입 계획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학로를 침범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제한 운영반경을 제시하였는가?	타워크레인 운행 계획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풍 및 조망	공통	교지 주변 동·서·남·북 방향에서 남쪽에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대상학교 인근 건축물 배치도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일조	공동	일조피해 학교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 후 일조 불만족지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존	사업시행 후 기존침해지점의 개수가 사업시행 전보다 많은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 후 '총 일조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기존침해지점의 개수'가 사업시행 전보다 많거나 같은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크기 및 외형	교지 면적	신설 법정 교지면적을 만족하고 있는가?	학교시설의 학생 수, 학급 수, 교지면적 등의 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 형태	신설 교지형태가 정형인가?	교지형태 및 학교 배치 예측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형 및 토양 환경	지형 및 경사도	신설 학교용지 경계가 표시된 표고 분석도와 경사도 분석도, 학교용지 부지조성 계획과 지반특성 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부지조성계획도, 표고 분석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신설 과거 10년간 풍수해 등 재해이력이 있는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 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구역 지정현황을 제시하였는가?	홍수범람구역현황,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수해상습지 현황, 산사태위험지구 현황, 지진발생 현황, 하천의 계획홍수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했던 사업부지 인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사업부지 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토양 환경	신설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가 과거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닌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인가?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토양 환경	신설	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 기준에 적합한가?			도면/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 내 또는 주변의 대기 현황농도 조사 결과가 환경기준값 이하인가?			학교 위치도 및 측정(조사)지점 위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통	<table border="1"> <thead> <tr> <th>환경 기준</th> <th>24H</th> <th>1Y</th> </tr> </thead> <tbody> <tr> <td>PM₁₀ [μg/m³]</td> <td>100</td> <td>50</td> </tr> <tr> <td>PM_{2.5} [μg/m³]</td> <td>35</td> <td>15</td> </tr> <tr> <td>NO₂ [ppm]</td> <td>0.06</td> <td>0.03</td> </tr> </tbody> </table>					환경 기준	24H	1Y	PM ₁₀ [μg/m ³]	100	50	PM _{2.5} [μg/m ³]	35	15	NO ₂ [ppm]	0.06	0.03	
환경 기준	24H		1Y																	
PM ₁₀ [μg/m ³]	100		50																	
PM _{2.5} [μg/m ³]	35	15																		
NO ₂ [ppm]	0.06	0.03																		
대기 환경	대기질	기존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지 내 대기영향예측 결과가 환경기준값 이하인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환경 기준</th> <th>24H</th> <th>1Y</th> </tr> </thead> <tbody> <tr> <td>PM₁₀ [μg/m³]</td> <td>100</td> <td>50</td> </tr> <tr> <td>PM_{2.5} [μg/m³]</td> <td>35</td> <td>15</td> </tr> <tr> <td>NO₂ [ppm]</td> <td>0.06</td> <td>0.03</td> </tr> </tbody> </table>			환경 기준	24H	1Y	PM ₁₀ [μg/m ³]	100	50	PM _{2.5} [μg/m ³]	35	15	NO ₂ [ppm]	0.06	0.03	저감효율 산출자료, 저감방안 적용 후 대기질 예측농도 결과, 예측 모델 입출력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 기준	24H	1Y															
			PM ₁₀ [μg/m ³]	100	50															
PM _{2.5} [μg/m ³]	35	15																		
NO ₂ [ppm]	0.06	0.03																		
공통	대기오염유발원을 조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대기환경과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기 환경	대기질	기존	대기질 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사 근거자료, 조치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약취	신설	학교용지 주변의 복합약취(희석배수)가 평균 15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	학교 위치도 및 측정지점 위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복합약취(희석배수)가 평균 15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약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및 약취유발원을 조사하였는가?	조사 근거자료,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약취와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음 및 진동	공통	소음·진동 유발원(복합영향) 및 소음·진동도 현황측정을 분석하였는가?	소음·진동 유발원 조사 현황도 및 소음·진동도 측정지점 위치도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도 목표기준 설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준	공사·운영 시 소음·진동도 예측을 수행하였는가?	도표/도면, 시추추상도(굴착깊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는가?	회절감쇠치 산정식,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운영 시 소음·진동도 예측을 수행하였는가?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운영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는가?	회절감쇠치 산정식,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변 유해 환경	금지 행위 및 시설	공통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법 제 9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거나 또는 설치 계획이 있는가?	금지행위 시설 목록, 금지행위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험 시설	공통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위험 시설이 있거나 또는 입지 예정인 곳은 없는가?	위험 시설 목록,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 시설	기반 시설	공통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이 가능한가?	도면/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공공 시설	공통	공사로 인하여 주변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도면/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평가기준별 검토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례 점검

1. 위치

1) 일반사항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	×
위치	일반 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신설	학교 용지와 공원녹지의 인접 정도가 100m 이하인가?	토지이용계획도, 공원녹지 기본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존	학교 용지와 인근 공원녹지 현황, 사업구역 내 공원시설 계획을 조사하였는가?	평가대상 학교 인접 공원 및 녹지 현황 - 연관 자료 : 공원녹지 기본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 평가대상 학교와 인접 공원 및 녹지와의 연계성(학교용지와 공원·녹지 간 거리)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도면/도표에 작성·반영되었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내 공원녹지 배치
 - [그림 15]와 같이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학교용지 인근 녹지 및 공원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용지와 해당 시설 간 거리를 측정한 조사결과를 확인



[그림 15] 공원 및 녹지축 연계 평가 작성 사례(신설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와 공원녹지간 거리에 따른 평가 등급 결과가 수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평가 결과가 '보통(3점)' 미만인 경우 관련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
- ☑ 미기재 시 보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평가서 검토 접수 전에 다시 제출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작성기관에 요청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 인근 주변을 중심으로 기존 공원녹지 현황에 따른 연계성(학교용지와 공원·녹지 간 거리)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도면/도표에 작성·반영되었는지 확인
- ☑ 사업구역 내 공원부지 계획이 제안된 경우 사업 전·후 공원녹지 연계성 평가 결과를 제안하고 있는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관할 지자체 「공원녹지기본계획」³⁾ 참고 여부
- ☑ (사업구역 내 공원부지 확인) 단지배치도
 - 학교 주변 지도를 참고하여 학교 인근 녹지 및 공원현황 파악, 학교와 해당 시설 간 거리 측정 조사결과 확인((그림 16) 참고)



[그림 16] 공원 및 녹지축 연계 평가 작성 사례(기존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와 공원녹지 간 거리에 따른 학교용지와 공원녹지 간 거리에 따른 평가 등급 결과가 수록되었는지 확인
- ☑ 평가 등급 결과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며, 미기재 시 보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평가서 검토 접수 전에 다시 제출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평가서 작성기관에 요청

3)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도시공원과 녹지의 현황, 시설 결정 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일반 사항	공공 문화 시설 인접성	신설	학교 용지가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200m 이하로 배치되어 있는가?	토지이용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존	학교 인근 공공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관할 지자체(시군구) 공공문화시설 현황 - 연관 자료 : 시군구 홈페이지 내 공공문화시설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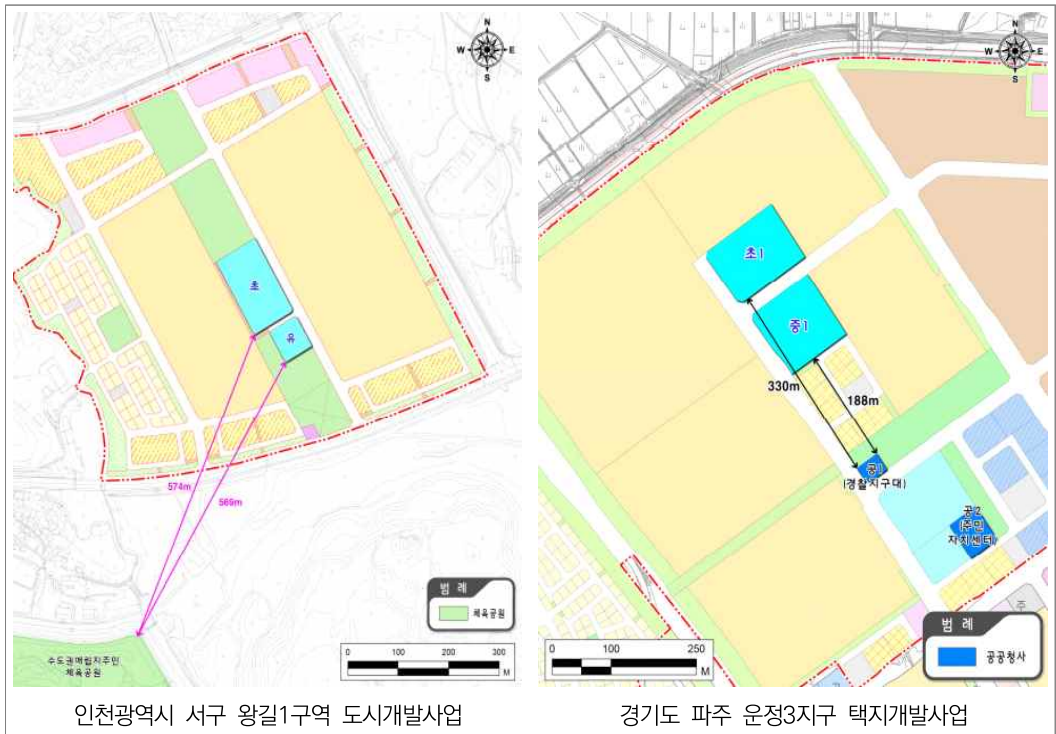
- ☑ 평가대상 학교와 공공문화시설 간 연계성 정도(학교용지와 공공문화시설 간 거리)를 조사한 도면/도표를 수록하였는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토지이용계획도 내 공공문화시설 배치
 -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학교용지 인근 공공문화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용지와 해당 시설 간 거리 측정 조사 결과 확인([그림 17] 참고)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와 공공문화시설 간 거리에 따른 평가 등급 결과가 수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평가 결과가 '보통(3점)' 미만인 경우 관련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
- ☑ 미기재 시 보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평가서 송부 전에 다시 제출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작성기관에 요청



[그림 17] 공공문화시설 연계성 평가 작성 사례(신설학교)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평가대상 학교와 공공문화시설 간 연계성 정도(학교용지와 공공문화시설 간 거리)를 조사한 도면/도표를 수록하였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관할 지자체 누리집 내 공공문화시설 현황 참고 여부
 - 학교 주변 지도와 공공문화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와 인근 공공문화시설 현황 파악([그림 18] 참고)



[그림 18] 공공문화시설 연계성 평가 작성 사례(기존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와 공공문화시설 간 거리에 따른 평가 등급 결과가 수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평가 결과가 '보통(3점)' 미만인 경우 관련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
- ☑ 미기재 시 보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평가서 송부 전에 다시 제출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작성기관에 요청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일반 사항	학생 및 학생 배치 계획 부합성	공통	해당사업지구 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하는가?	해당 학교 (평가대상/ 학교) 학구도 학생 배치 계획 협의 여부(협의 의견, 공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 ☑ 학생수용계획 수록 여부 확인
- ☑ 관할 교육청에 부합하는 학생배치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관할 교육청 학생배치계획 협의 근거자료

■ 검토시 주의사항

- ☑ 관할 교육청 학생배치계획 협의 근거자료는 부록에 첨부하기 보다는 되도록 해당 평가결과와 함께 본문 상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함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 관할 교육청 학생배치 의견 수록 여부

■ 필수 검토 자료

- ☑ 관할 교육청 학생배치계획 협의 근거자료

■ 검토시 주의사항

- ☑ 관할 교육청 학생배치계획 협의 근거자료는 부록에 첨부하기 보다는 되도록 해당 평가결과와 함께 본문 상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함

2) 통학범위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범위	공동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통학권 중심으로부터 학교 경계간 거리가 150m 이하인가?	(초) 도보 통학거리 조사결과 도면 (중, 고)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으로 부터 통학 소요 시간, 통학 경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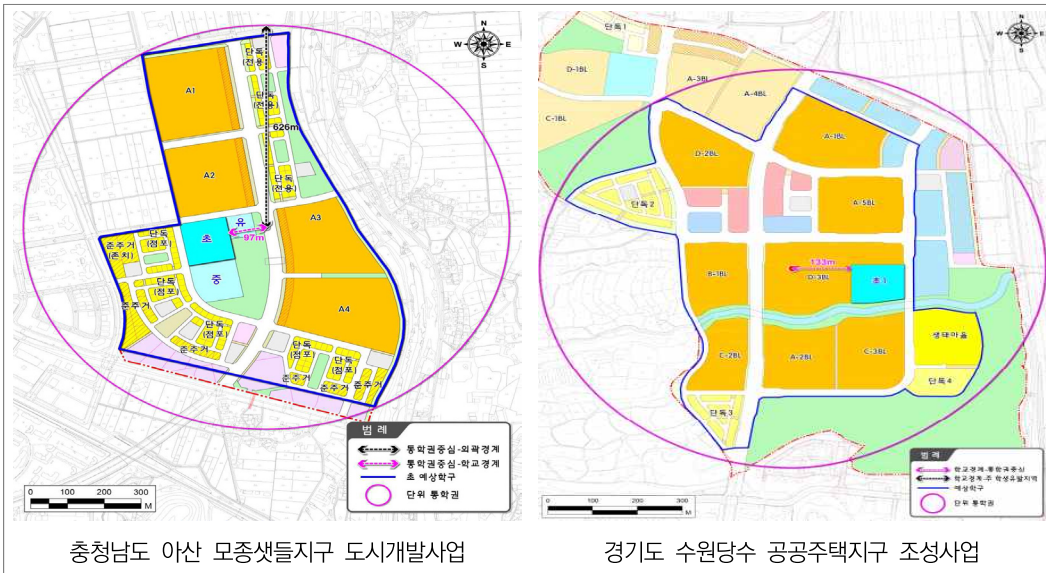
■ 검토 방법

- ☑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분석에 따른 평가 등급 수록 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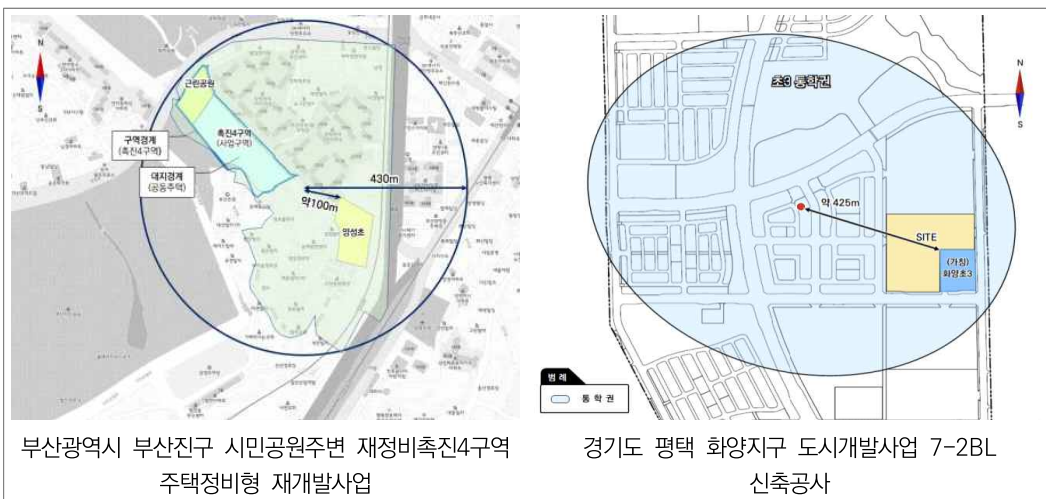
■ 필수 검토 자료

☑ 단위통학권 중심배치 분석 도면 수록 여부

- (신설학교)예상통학구를 단위 통학권으로 보고, 통학구 중심으로부터 통학권역까지의 거리 측정 결과 확인([그림 19] 참고)
- (기존학교)평가대상 학교의 통학구 중심으로부터 통학권역까지의 거리를 측정 조사 결과 확인([그림 20] 참고)



[그림 19] 단위통학권 중심배치 평가 사례(신설학교)



[그림 20] 단위통학권 중심배치 평가 사례(기존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에서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평가를 종종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평가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수록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작성 기관에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단위통학권 중심배치' 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보통(3)'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제출 시 '미흡(4)', '매우 미흡(5)'으로 평가될 경우 '보통(3)'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주고 있음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범위	공통	사업지로부터 학교(교육시설)까지의 이격거리가 초등학교 1,000m 이하, 중.고등학교 2,400m 이하 인가?	(초) 도보 통학거리 조사결과 도면 (중, 고)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으로 부터 통학 소요 시간 통학 경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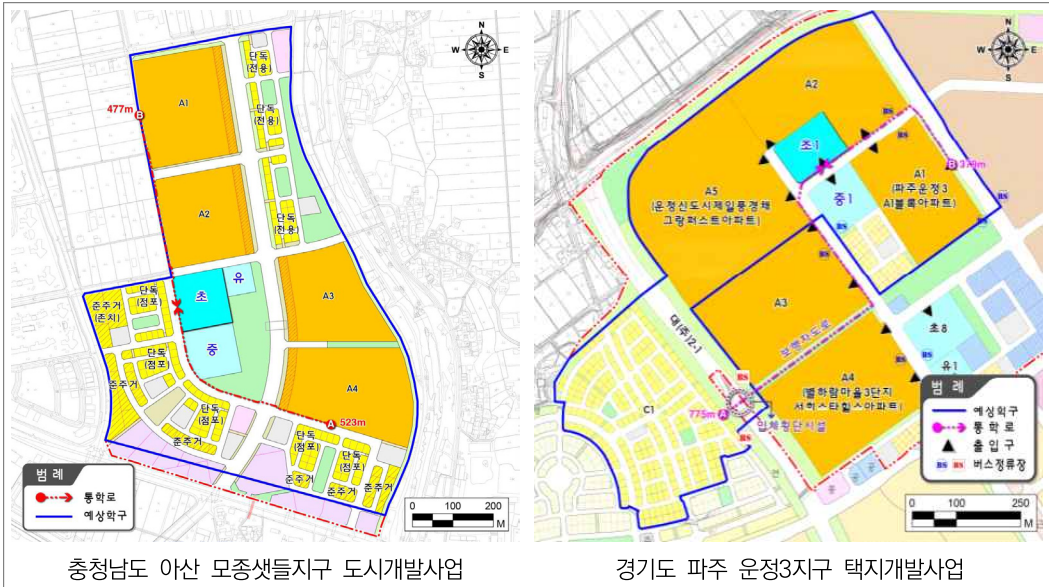
- ☑ (초등학교) 통학구에서 평가대상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 및 소요시간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중고교) 통학구에서 평가대상 학교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거리 및 소요시간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토지이용계획도 활용한 통학 거리(학생유발 주거지~평가대상 학교(초교), 대중교통 하차 지점~평가대상 학교(중고교)) 분석도면 수록 여부
 - [그림 21]과 같이 학교용지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통학거리를 예측

■ 검토시 주의사항

- ☑ 사업구역 배치예정학교가 평가대상 외 학교인 경우 해당 학교까지 포함하여 통학 소요 거리를 분석한 결과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1] 통학범위 평가 사례(신설학교)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 (초등학교) 통학구에서 평가대상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 및 소요시간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 평가대상 학교 외 정비 대상지(사업구역) 배치예정학교까지의 통학거리 및 소요시간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중고교) 통학구에서 평가대상 학교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거리 및 소요시간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필수 검토 자료

- ☑ 민간 및 공공 지도 서비스 기반으로 통학거리 산정
 - [그림 22]와 같이 평가대상 학교/배치 예정 학교로부터 사업구역까지의 도로 통학거리 확인

■ 검토시 주의사항

- ☑ 사업구역 배치 예정 학교가 평가대상 외 학교인 경우 해당 학교까지 포함하여 통학 소요 거리를 분석한 결과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2] 통학범위 평가 사례(기존학교)

3) 통학안전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공통	학교 인접도로 및 연결도로에 교통 유발시설이 존재하지 않는가?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 전후 교통량 변화 - 연관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영향평가, 도로서비스 수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 인근에 교통유발시설(공용주차장, 상업시설, 주차장 등) 현황 파악 및 이격거리 조사분석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하였는지를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내 교통유발시설⁴⁾ 입지 조사결과 수록여부

-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학교용지로부터 인근 교통유발시설과의 이격거리⁵⁾를 측정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수록 여부 확인([그림 23] 참고)



[그림 23] 교통유발시설 인접성 평가 사례(신설학교)

- 개념: 일상적으로 혹은 특정 시간대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여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
- '교통유발' 용어가 담긴 근거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해당 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고, 규정 내용 중에 교통유발량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교통유발',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음. 한편,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평가대상 시설들이 나열되고 있음(공동주택,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운도업,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관광휴게, 장례시설이 이에 해당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인구 규모별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를 명시하고 있음
 - 교통유발계수가 높을수록 교통유발의 정도가 심한 시설이라 볼 수 있음
 - 동일 시설이라도 도시 규모(100만 이상, 50~100만, 30~50만, 10만~30만)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는 차이가 있음
 - 지자체 '조례'에서 교통유발시설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근린생활 시설 중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교통유발시설에 해당
- 이격거리: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의미함

■ 검토시 주의사항

- ☑ 교통유발시설 용도 세부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토지용도(상업용지, 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 학교와 교통유발시설이 인접하거나, 주요 통학로에 해당 시설 배치계획이 확인되면 이를 이격하도록 검토 의견을 주고 있음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 인근에 교통유발시설(공용주차장, 상업시설, 주차장 등) 현황을 파악한 조사결과 수록 여부를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민간 및 공공 지도 서비스 기반으로 사업구역 인근 교통유발시설입지 조사결과 수록 여부
 - 사업구역 내 교통유발시설 확인(그림 24) 좌측 도면 참고) 및 토지이용현황을 참고하여 학교용지로부터 인근 교통유발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측정하여 조사 결과 확인(그림 24) 우측 도면 참고)



[그림 24] 교통유발시설 인접성 평가 사례(기존학교)

6) 이격거리: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의미함

■ 검토시 주의사항

- ☑ 교통유발시설 누락된 경우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작성기관에 요청이 필요함
- ☑ (참고) 사업구역이 규모가 크면서 사업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는 계획인 경우 해당 시설이 교통유발시설로 볼 수 있음([그림 24] 좌측 도면 참고)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공통	학교 인접도로가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되어 있는가?	학교 인접도로 현황 - 연관자료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로 현황도시관리 계획 도로결정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에 인접한 도로 현황을 파악한 도면이 수록되었는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교통처리계획도 또는 교통종합개선안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자료
- [그림 25]와 같이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학교용지 인접도로 확인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 신설용지 인접도로가 국지도로, 집산도로로 계획되었는지 확인



[그림 25] 교지 인접도로 평가 사례(신설학교)

기존학교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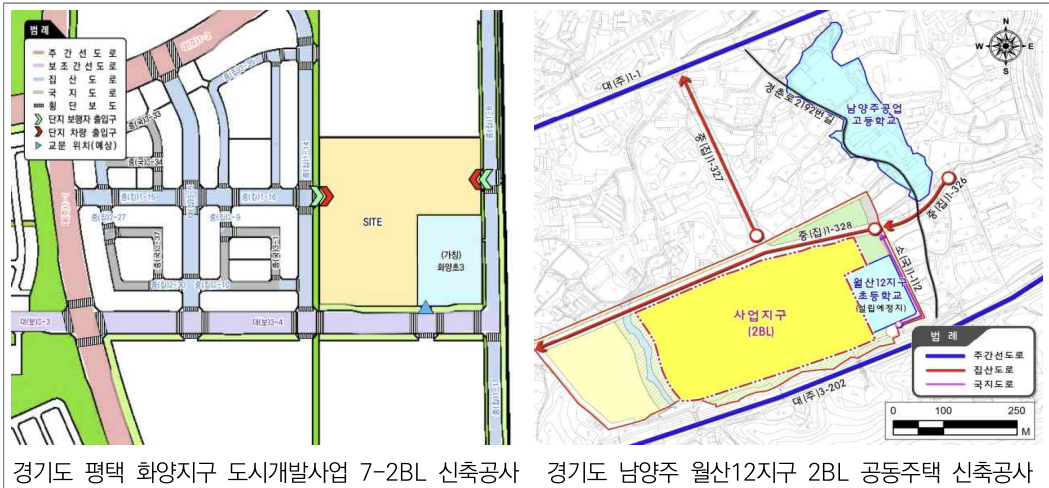
- ☑ 평가대상 학교에 인접한 도로 현황을 파악한 도면이 수록되었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교통처리계획도 또는 교통종합개선안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자료
 - [그림 26]과 같이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학교용지 인접도로 확인
-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도로 정보 수록 여부

■ 검토시 주의사항

-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에서 인접도로 현황 조사 결과를 종종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평가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수록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작성 기관에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BL 신축공사 경기도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그림 26] 교지 인접도로 평가 사례(기존학교)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공통	통학로가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 도로를 1회 미만 횡단하는가?	학교~사업지 통학로 횡단성 평가 결과 - 연관자료: 교통종합개선안도, 교통처리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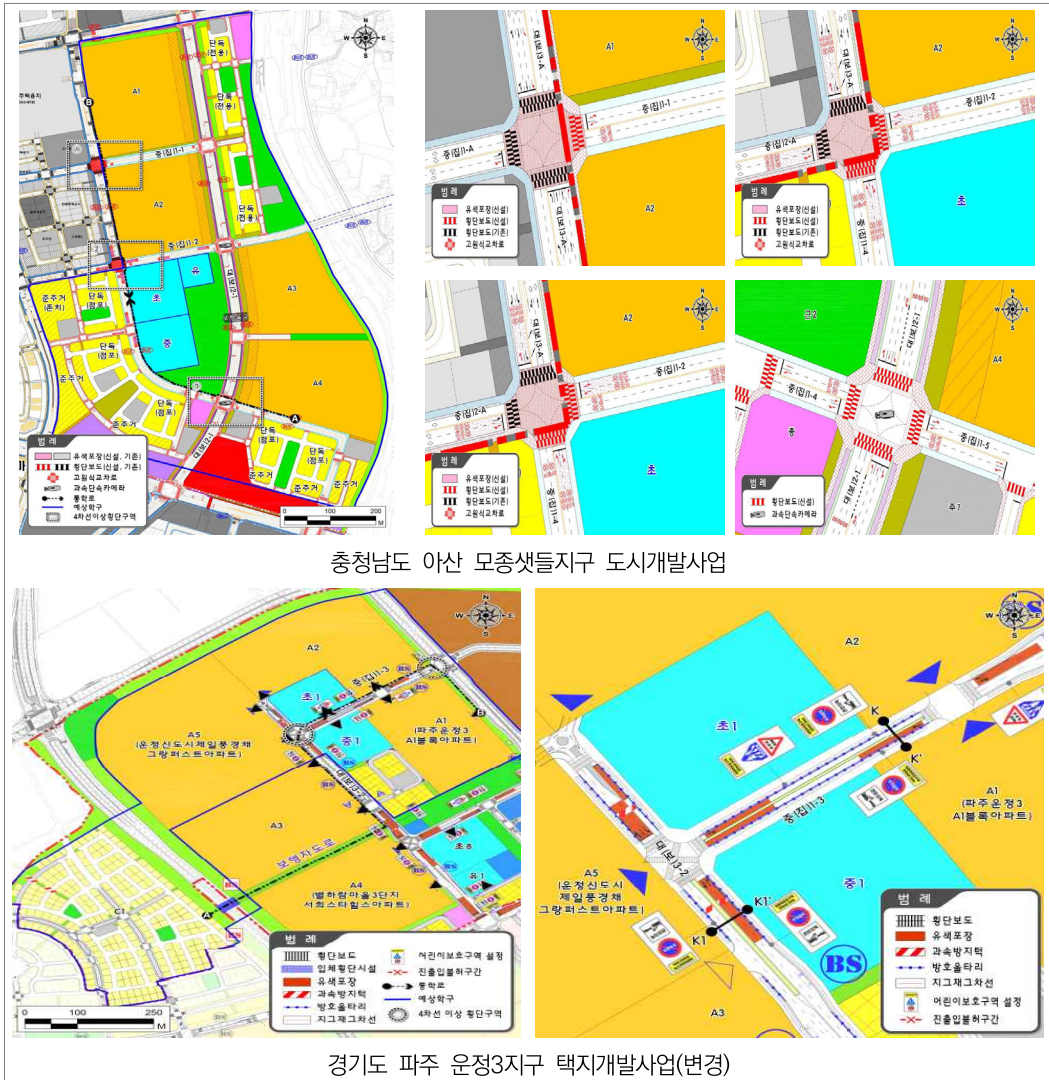
- 예상통학구(주거지역)에서 평가대상 학교 도보 통학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 횟수와 평가 결과 수록 확인
- 4차선 이상 도로 횡단 1회 이상인 경우 해당 횡단구간에 대한 횡단안전대책 수록 여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교통처리계획도 혹은 교통종합개선안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자료
 - [그림 27]과 같이 학교용지 예상 통학구 내 블록으로부터 학교까지 통학 시 4차로 이상 도로 횡단유무를 파악하고, 횡단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교통정온화시설(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유색포장 등) 대책 적용 확인

■ 검토시 주의사항

☑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결과를 도면만으로 제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많음. 본 평가서는 전문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시공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학교,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도면 보기가 익숙치 않은 실무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자료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성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된 교통안전시설 대책이 본문 상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할 수 있도록 요청 필요



[그림 27]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성 평가 작성 사례(신설학교)

기존학교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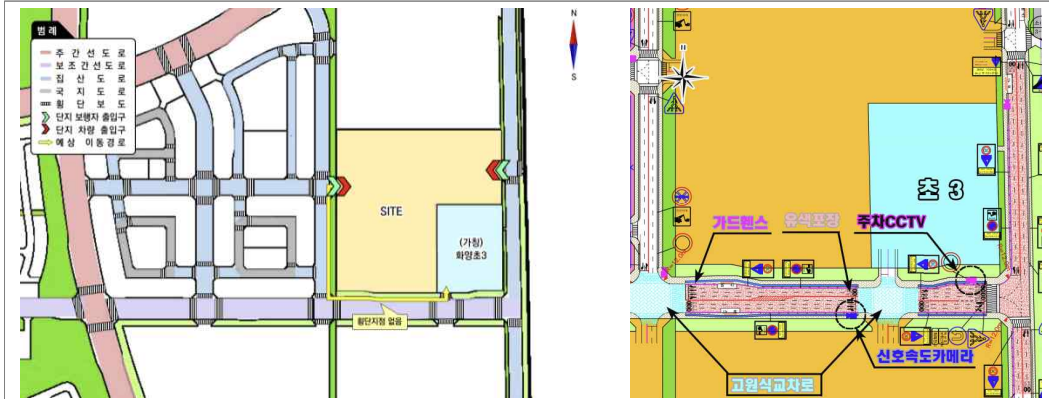
- ☑ 사업대상지에서 평가대상 학교 도보 통학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 횟수와 평가 결과 수록 여부를 확인
- ☑ 사업대상지에서 평가대상 학교 외 배치 예정 학교 도보 통학 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 횟수와 평가 결과 수록 여부를 확인
- ☑ 4차선 이상 도로 횡단 1회 이상인 경우 해당 횡단구간에 대한 횡단안전대책 수록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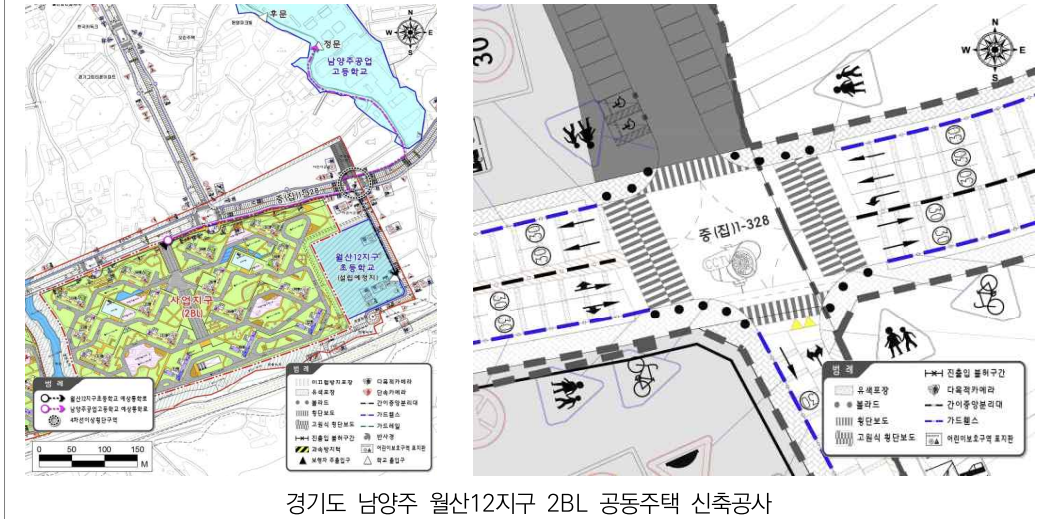
- ☑ 민간 및 공공 지도 서비스 기반으로 도보 통학 경로 파악
 - 사업구역에서 평가대상 학교/배치 예정 학교 통학 시 4차로 이상 도로 횡단 유무를 파악하고, 횡단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교통정온화시설(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유색포장 등) 대책 적용 확인([그림 28] 참고)

■ 검토시 주의사항

- ☑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결과를 도면만으로 제시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많음. 본 평가서는 전문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시공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학교,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도면 보기가 익숙치 않은 실무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자료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성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된 교통안전시설 대책이 본문 상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BL 신축공사



경기도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그림 28]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성 평가 작성 사례(기존학교)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공통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었는가?	학교~사업지 도로 연계현황 - 연관자료 : 교통종합개선도/ 교통처리계획도 도로 단면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 통학로 중심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 유효 보도 폭 확보 현황 조사한 도면, 도표 제시 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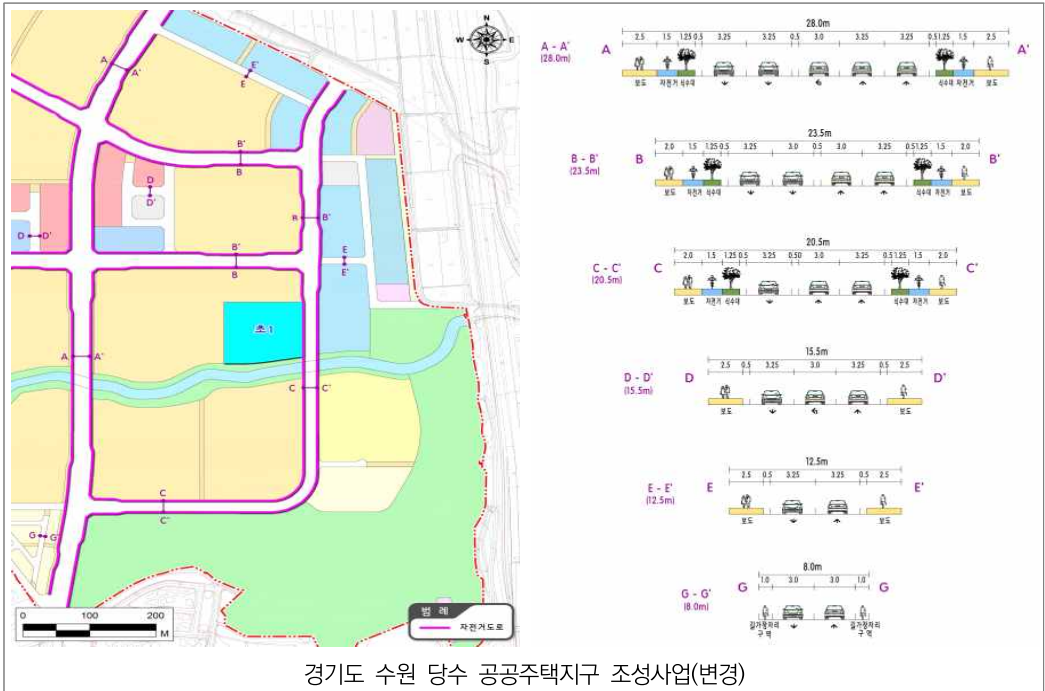
■ 필수 검토 자료

-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종합개선안도 등을 참고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 유효보도 폭) 확보 현황 조사한 도면, 도표
 - [그림 29]와 같이 학교용지 인접 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최소 유효 보도폭원을 확보한 도로 개설 계획 확인

■ 검토시 주의사항

- ☑ (참고) 학교 신설용지와 연계된 도로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학교 인접 블록에서 단절되거나 혹은 학교 주변 도로만 개설 계획이 배치된 경우 통학구에서 자전거 통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연계 검토 의견을 주고 있음

7) 보도 유효 폭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참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그림 29]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 확보 평가 사례(신설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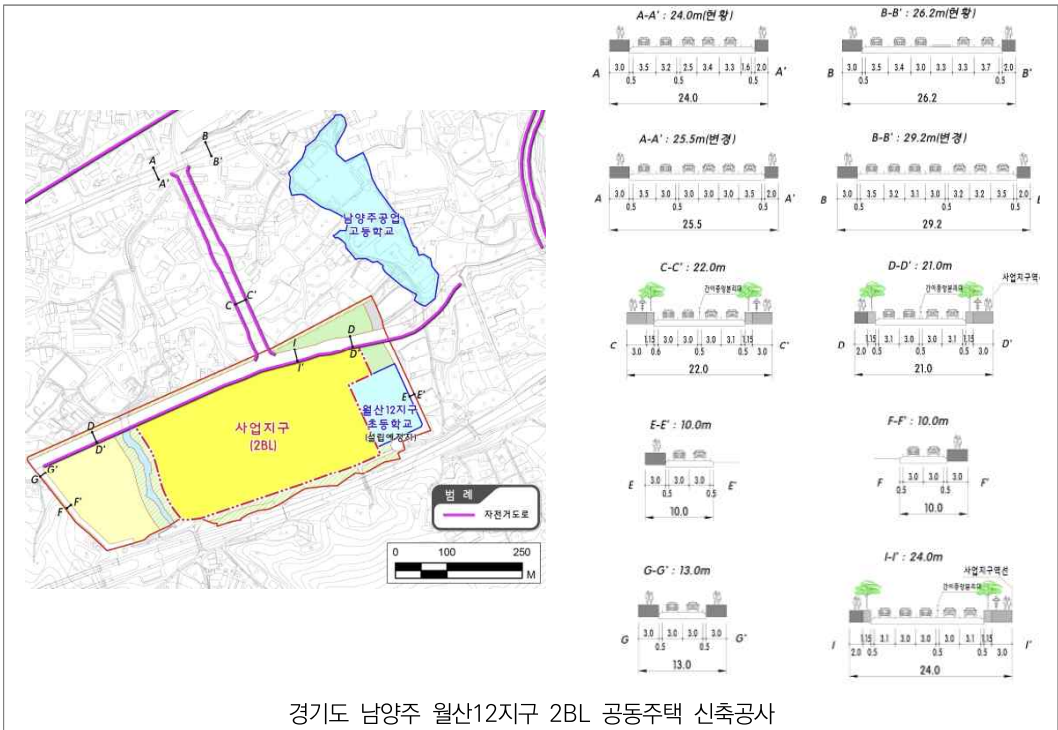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 통학로 중심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 유효 보도 폭 확보 현황 조사한 도면, 도표 제시 여부

■ 필수 검토 자료

- ☑ 교통처리계획도 혹은 교통종합개선안도 등을 참고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 유효보도 폭 확보 현황 조사한 도면, 도표
 - [그림 30]과 같이 사업구역 인접도로를 중심으로 통학로 변에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최소 유효 보도폭원을 확보한 도로 개설 전후 계획 확인



[그림 30]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 확보 평가 사례(기존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참고) 기존학교의 경우 사업구역과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도로부지 외의 인근 도로 개선 검토의견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업구역 경계에서 보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보도 유효 폭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공동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요소 중 만족 개수가 2개 이상이고, 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를 최소화 하였는가?	사업구역 보행출입구와 학교 교문 위치관계 도면 - 연관자료 : 지구단위계획 차량 진출입 결정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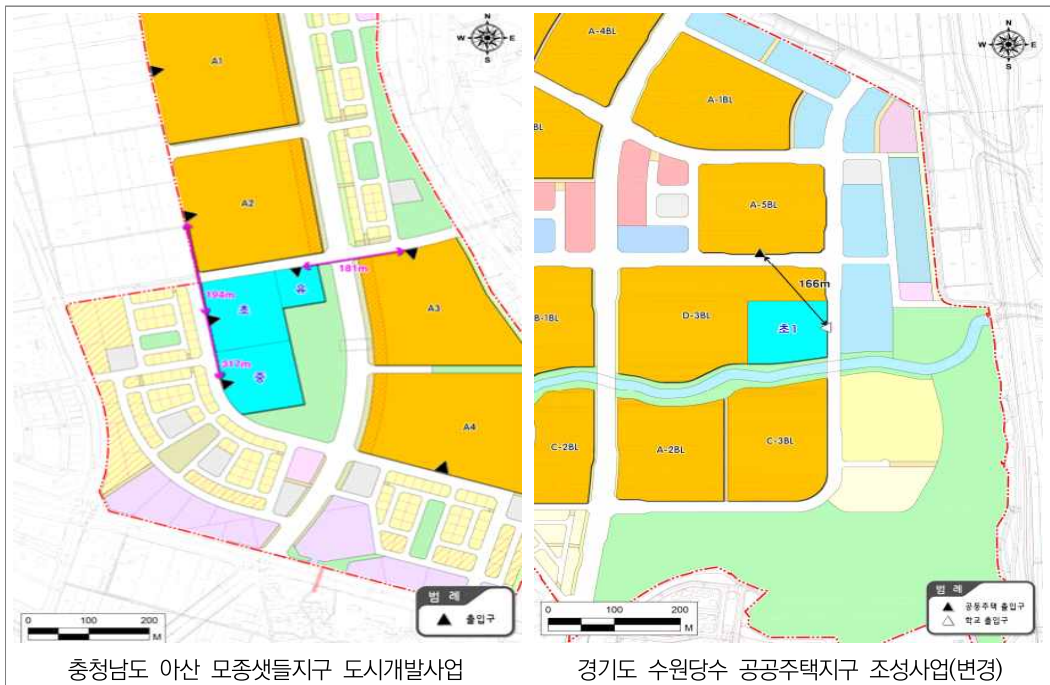
신설학교

■ 검토 방법

- 예상통학구(주거지역)와 평가대상 학교 출입구간 위치 관계 조사 결과 여부를 수록하였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참고한 학교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위치관계 파악 도면 수록 여부
 - 학교용지와 예상 통학구내 블록 단지 출입구와의 위치관계 확인([그림 31] 참고)



[그림 31] 교문과 아파트출입구 거리 계획요소 평가 사례(신설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각 블록(주거지역)별로 분석결과가 수록되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분석되지 않은 경우 요청하여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기존학교

■ 검토 방법

- ☑ 사업구역(공동주택 단지 출입구)과 평가대상 학교 출입구간 위치 관계 조사 결과 여부를 수록하였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 교문과 사업구역 단지배치도 내 아파트단지 출입구 위치관계 파악 도면
- 사업구역 단지 출입구와 학교 출입구와의 위치관계 만족도 확인([그림 32])



[그림 32] 교문과 아파트출입구 거리 계획요소 평가 사례(기존학교)

■ 검토시 주의사항

- ☑ 단지 출입구 중 차량 진출입구가 학교 교문과 인접하여 배치된 경우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평가서 상에 추가 기술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계변경 필요성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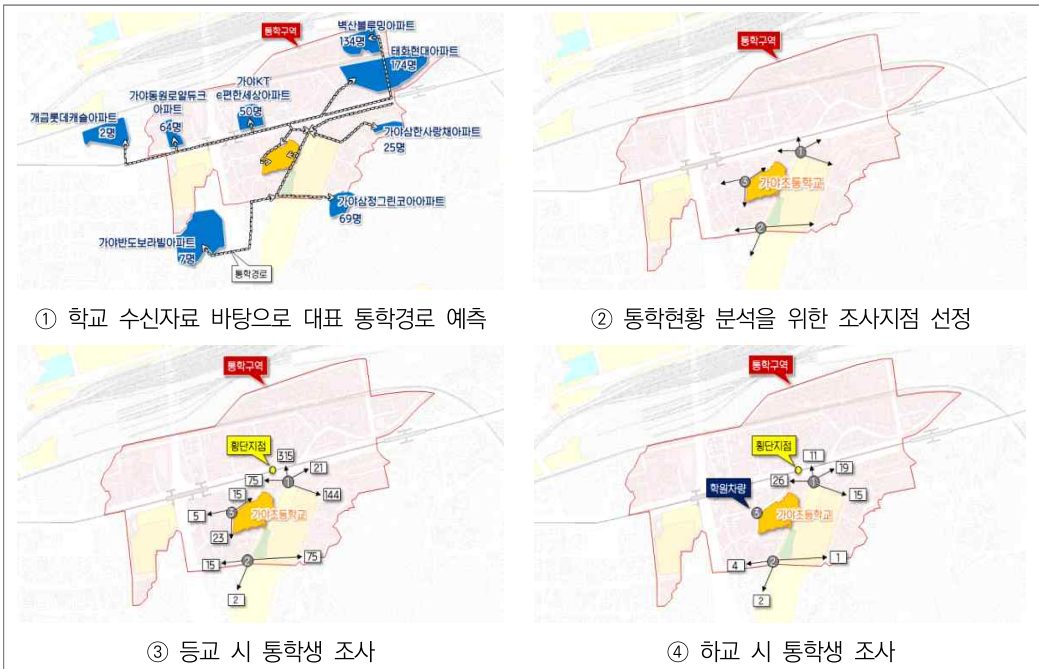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기존	통학로변에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 안전표지판, 안전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였는가?	공사차량 진출입 경로, 통학경로, 안전요원,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공사차량 이동경로와 평가대상 학교 통학로 상층 구간에 대한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물 배치계획 수록 여부를 확인
- ☑ (평가대상 학교가 설립예정지인 경우) 학교설립 예정 시기, 예상 통학권 분석한 도면, 도표 수록 여부를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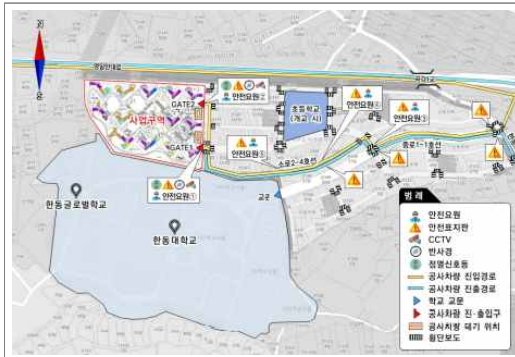
- ☑ 통학현황 조사 여부,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물 배치계획도
(통학로, 공사차량 이동 경로 함께 표기)
 - 사업구역이 속한 통학구를 중심으로 등학교 시간대 통학현황 조사 실시 결과 확인 ([그림 33], [그림 34] 참고)
 - 사업구역 공사를 위하여 설정한 공사차량 이동경로와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간이 상층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물 배치 확인([그림 35] 참고)



[그림 33] 통학현황 분석 작성 사례1 (부산광역시 가이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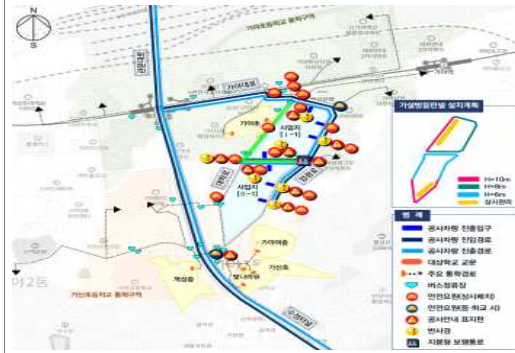
[그림 34] 통학현황 분석 작성 사례2 (전라남도 화순군 삼천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1블록
1롯데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용산구 원호로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2
주상복합 신축공사

[그림 35] 사업구역 주변 안전시설물 및 안전요원 배치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통학현황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 평가서에 수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 ① 현장조사에 기반한 조사분석 결과인지, 학교에 문의하여 거주 소재지를 확인하여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작성한 통학현황 분석인지 혹은 도시개발예정지 등 부지만 확보된 경우 예상통학로 예측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서에 관련 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여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함(거짓·부실 작성 방지)
- ② 사업시행자가 현장조사에 기반한 통학현황 분석을 실시한 경우 조사일자, 조사 기간, 조사 시간대, 조사원 수, 조사 지점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관련 도면과 표를 작성하여 평가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평가대상 학교에 문의하여 교문 이외의 학생들의 등하교 출입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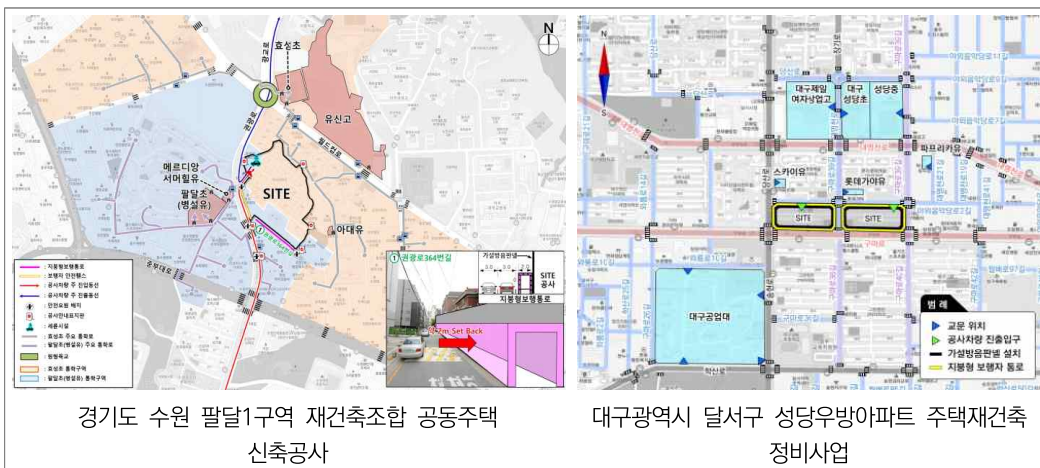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기존	공사로 인하여 통학로 단절, 폐쇄가 발생하였는가?	통학현황조사 도표, 공사차량 진출입 도면, 공사차량 이동경로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사업구역 공사에 따른 통학로 단절, 폐쇄 여부 조사결과 수록 여부 확인, 대체 통학로 우회통학구간 제시 여부 확인
- ☑ 지붕정보행자 통로 설치 계획 제시 시 현장 도로 사진과 시설 설치계획 단면도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통학로 확보 계획 제시한 도면
 - 사업구역 공사 중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간이 공사 전 대비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및 통학로 단절과 폐쇄가 나타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통학로 확보 계획 제시 계획 확인 ([그림 36], [그림 37] 참고)



[그림 36] 공사 중 사업지 인근 교육시설 통학로 확보계획 사례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5차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그림 37] 지붕형보행자통로 설치 대책 제시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참고) 지붕형보행자 통로는 사업구역 경계부가 통학도로 이용될 것으로 확인 혹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임.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난 후 실제 보행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유효 폭원이 확보되었는지, 실제 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설치를 계획하였는지 검토하고 있음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기존	절대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하여 공사장 출입구를 계획하였는가?	공사장 출입구 설치계획 도면, 절대보호구역과 공사장 출입구 위치관계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절대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이동경로, 사업구역 공사 출입구 위치관계 표기한 도면 수록 여부

■ 필수 검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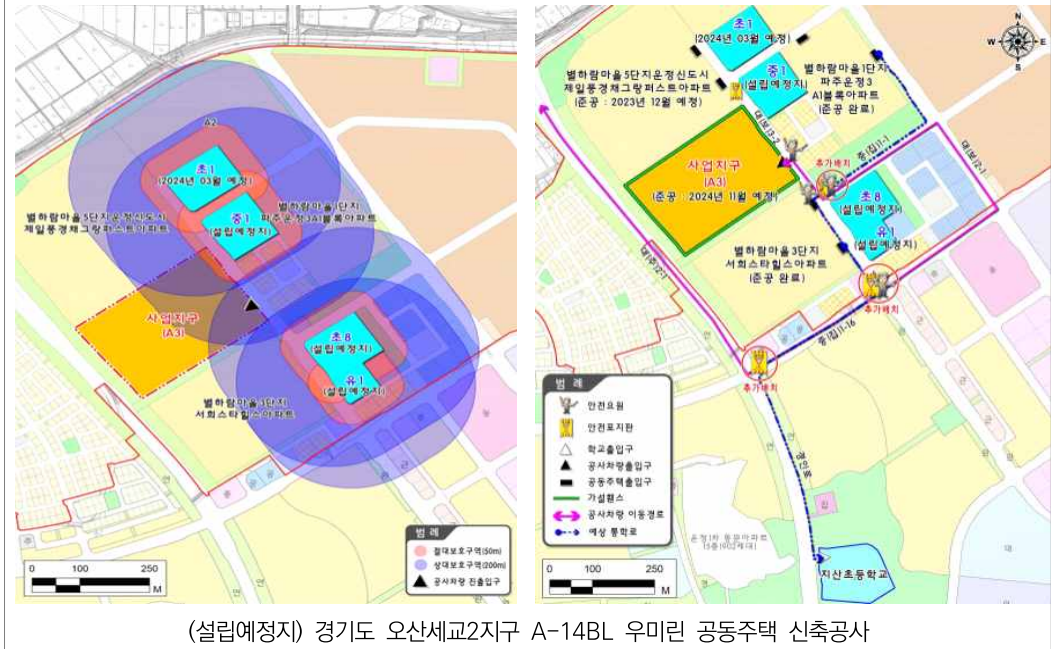
- ☑ 절대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이동경로, 사업구역 공사 출입구 위치관계 표기한 도면
 - 사업구역 공사 시 공사장 출입구 위치가 평가대상 학교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 여부 확인([그림 38])

■ 검토시 주의사항

- ☑ 일부 평가서에서 절대보호구역 내 공사장 출입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없이 본문에 문구로 서술하고 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도면이 수록되었는지 필히 점검



(기존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로로 산호아파트 재건축적비사업



(설립예정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A-14BL 우미린 공동주택 신축공사

[그림 38] 절대보호구역 내 공사장 진출입구 설치 제한(좌상, 좌하) 및 절대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하여 공사차량 진출입 이동경로 제시(우상, 우하) 작성 사례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기존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 운영 시간대를 제시하였는가?	등하교시간대를 고려한 공사차량 진출입 계획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평가대상 학교 등하교시간대 제시와 해당 시간 외 공사차량 운행 계획 수록 여부를 확인
- ☑ 사업구역이 평가대상 학교와 인접하여 있거나, 공사차량 이동경로가 통학 동선과의 상충도가 높을 경우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공사차량 제한 운영 시간대 제시하였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가 운영 중인 경우, 평가대상 학교 수업 시간표, (선택적)평가대상 학교와의 협의 근거자료(회의 사진, 회의 내용 등)
- ☑ 개교 이전 또는 개교 미정인 경우, 개교 시를 예측하여 공사차량 진출입 계획 추가 제시 확인

■ 검토시 주의사항

-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학교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공사차량 운행 제한 시간대를 협의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함
 - 사업구역과 평가대상 학교가 인접한 경우(절대보호구역 내 위치)
 - 사업구역에 인접한 도로가 주요 통학로(평가대상 학교 및 사업구역이 속한 학구)로 이용되는 경우
 - 공사차량이 학교에 인접한 도로를 경유할 경우(원칙적으로 공사차량은 학교 인접 도로를 회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도로망 연계 특성, 주변 지역 여건으로 운행이 불가피하여 학교 인접 도로로 설정한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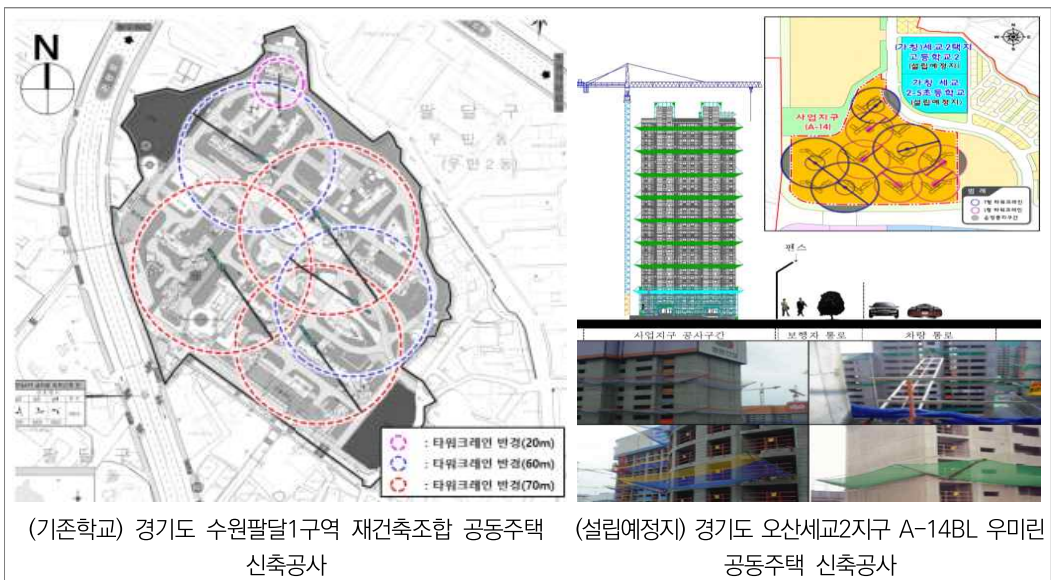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학 안전	기존	통학로를 침범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제한 운영반경을 제시하였는가?	타워크레인 운행 계획 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제한 운영반경 범위 제시한 도면 수록 여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제한 운영반경 범위 제시 도면
 - 타워크레인 운행계획을 확인하여 평가대상 학교 통학로 침범 여부 확인(그림 39) 참고)



[그림 39] 타워크레인 운행반경 제시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타워크레인 운영반경을 제시한 도면에 사업구역 경계 외부로 타워크레인이 운영되는 경우 제한 운영반경을 함께 표기하였는지 확인(그림 39) 우측 그림 참조)

4) 통풍·조망 및 일조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통풍 및 조망	공통	교지 주변 동·서·남·북 방향에서 남쪽에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대상학교 인근 건축물 배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통풍 및 조망 확보를 위해 학교 인근 건축물을 <표 13>과 같이 조사하고 방위별 현황이 평가서에 평가기준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용지 주변에 위치하거나 예정된 건물, 지형 등 토지이용 현황
- ☑ 토지이용계획, 공동주택배치도, 지형도 등, 필요시 현지조사

■ 검토시 주의사항

- ☑ 해당 학교의 방위별 인근 건축물 현황을 제시해야 하고, 최소 남쪽에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신설학교 평가 시 최대한 남쪽 방위로는 건물, 지형 등으로 가로막히지 않는 부지에 학교용지를 배치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기존학교 평가에서는 학교 남측에 있는 건축사업이 평가대상일 경우 일조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표 13〉 통풍 및 조망 확보 정도 평가 결과 작성 예

학교명	인근 토지이용 현황	방향	주변 현황
○○○		동	최고층 30층 아파트
		서	최고층 24층 아파트
		남	최고층 21층 아파트
		북	최고층 21층 아파트
		평가결과	미흡(1점)

☑ 「교육환경법」에 통풍 및 조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세부 기준이 없음. 특히 조망권 분석의 경우 소송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천공율’을 분석자료로 활용하나 조망권 자체를 인정받은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추후 평가 세부 기준 수립을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일조	공통 일조피해 학교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가?	일조분석 원본 도표, 사업시행 전·후 일조시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 후 일조 불만족지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대상학교의 각 일조면 사업시행 전·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일조기준 침해 여부를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일조분석 원본 도표(그림 40)
- ☑ 사업시행 전·후 일조시간표(〈표 14〉)

■ 검토시 주의사항

- ☑ 일조 기준(총일조, 연속일조)을 불만족하는 지점은 [그림 40], <표 14>와 같이 음영표시를 하고, 기존학교 평가 시 해당지점의 사업시행 전과 후의 변화시간(일조 증감시간)을 계산함
 - ※ 신설학교 평가의 경우 <표 14>에서 지점별 사업시행 전 결과가 있을 수 없어 [그림 40]과 같이 일조분석 원본 도표를 확인해 지점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에 모두 음영이 표시된 경우 일조 불만족지점인 것으로 평가함
 - ※ 기존학교 평가의 경우 <표 14>에서 지점별 사업시행 이전 결과에 음영이 없고, 사업시행 이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에 모두 음영이 발생한 경우 일조 불만족지점이 발생한 것임
- ☑ <표 14>는 학교별 및 동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표제목에 분석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교사동 명(名, name)을 기재함(각 동의 분류는 동이름 및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 ☑ 일조 증감시간은 <표 14>와 같이 각 교사동의 증감합계 및 증감평균을 계산하여 제시

행	열	총일조시간 08시~16시	연속일조시간 09시~13시	일조시간그래프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3:31:51	2:49:38	11:10	14:42											
1	2	2:31:48	2:11:37	11:48	14:20											
1	3	2:14:54	2:11:49	11:48	14:03											
1	4	1:54:33	1:54:33	11:48	13:42											
1	5	1:37:49	1:37:49	11:53	13:31											
1	6	1:23:42	1:23:42	11:53	13:17											
1	7	1:12:32	1:12:32	11:54	13:06											
1	8	0:54:30	0:54:30	12:00	12:54											
1	9	0:47:34	0:47:34	12:00	12:47											
2	1	0:18:05	0:18:05	13:06	13:25											
2	2	2:54:19	1:43:50	10:08	11:51	14:24	15:35									
2	3	2:31:54	2:11:43	11:48	14:20											
2	4	2:14:54	2:11:49	11:48	14:03											
2	5	1:42:53	1:42:53	11:48	13:31											
2	6	1:12:25	1:12:25	12:04	13:17											
2	7	0:58:41	0:58:41	12:05	13:04											
2	8	0:48:51	0:48:51	12:05	12:54											
3	1	1:11:10	1:11:10	12:20	13:31											
3	2	0:57:02	0:57:02	12:20	13:17											

[그림 40] 일조분석 원본 도표

〈표 14〉 00교사동의 사업시행 전·후 일조 증감시간

분석 지점	사업전				사업후				일조 증감시간		
	총일조	연속 일조	총일 조 만족 여부	연속 일조 만족 여부	총일조	연속 일조	총일조 만족 여부	연속 일조 만족 여부	총일조	연속 일조	
	08시 ~16시	09시 ~15시	08시 ~16 시	09시 ~15 시	08시 ~16시	09시 ~15시	08시 ~16시	09시 ~15시	08시 ~16시	09시 ~15시	
1	1	4:12:32	3:12:32	O	O	2:46:55	2:46:55	X	O	-1:25:37	-0:25:37
1	2	4:18:10	3:18:10	O	O	2:49:20	2:49:20	X	O	-1:28:50	-0:28:50
1	3	4:18:10	3:18:10	O	O	2:44:56	2:44:56	X	O	-1:33:14	-0:33:14
1	4	4:18:10	3:18:10	O	O	2:40:44	2:40:44	X	O	-1:37:26	-0:37:26
1	5	4:18:10	3:18:10	O	O	2:39:50	2:36:44	X	O	-1:38:20	-0:41:26
1	6	4:18:10	3:18:10	O	O	2:38:18	2:32:55	X	O	-1:39:52	-0:45:15
1	7	4:18:10	3:18:10	O	O	2:36:34	2:29:16	X	O	-1:41:36	-0:48:54
1	8	4:18:10	3:18:10	O	O	2:34:40	2:25:47	X	O	-1:43:30	-0:52:23
1	9	4:18:10	3:18:10	O	O	2:33:19	2:22:26	X	O	-1:44:51	-0:55:44
1	10	4:18:10	3:18:10	O	O	2:31:46	2:19:14	X	O	-1:46:24	-0:58:56
1	11	4:18:10	3:18:10	O	O	2:30:16	2:16:10	X	O	-1:47:54	-1:02:00
1	12	4:18:10	3:18:10	O	O	2:28:49	2:13:13	X	O	-1:49:21	-1:04:57
1	13	4:18:10	3:18:10	O	O	2:27:25	2:10:24	X	O	-1:50:45	-1:07:46
1	14	4:18:10	3:18:10	O	O	2:23:28	2:07:41	X	O	-1:54:42	-1:10:29
1	15	4:18:10	3:18:10	O	O	2:19:18	2:05:05	X	O	-1:58:52	-1:13:05
1	16	4:18:10	3:18:10	O	O	2:15:20	2:02:34	X	O	-2:02:50	-1:15:36
1	17	4:18:10	3:18:10	O	O	2:11:32	2:00:10	X	O	-2:06:38	-1:18:00
00교사동 증감합계									-5:50:42	-15:19:38	
00교사동 증감평균									-1:45:20	-0:54:06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위치	일조	기존	사업시행 후 기존침해지점의 개수가 사업시행 전보다 많은가?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지점 개소수 도표/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 분석 결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 후 '총 일조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기존침해지점의 개수'가 사업시행 전보다 많거나 같은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기존침해지점에서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도표를 통해 확인하고, 기존침해지점의 일조시간 감소가 교육청에서 수용 가능한 결과 여부를 확인함
 - ※ 기존침해지역: 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법적 일조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 기존침해지역 추가 일조시간 감소: 사업시행 이후, 기존침해지역의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 필수 검토 자료

- ☑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지점 변화 개소수 도표
- ☑ 기존침해지점 지점별 일조시간 감소 분석 결과 도표

■ 검토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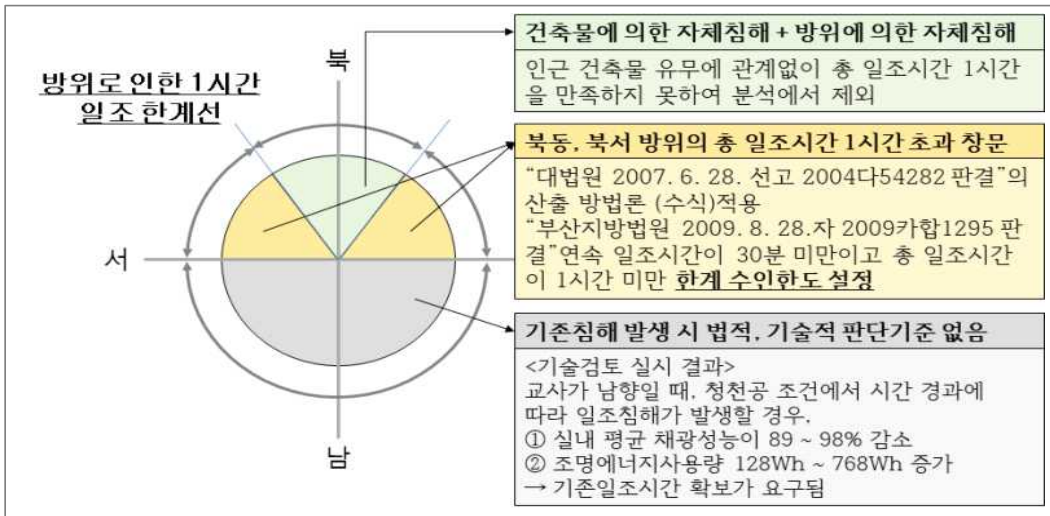
- ☑ 총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표 15>와 같이 사업시행 전·후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지점의 개소수를 확인하고, 기존침해지점의 일조시간 감소가 있는 경우 총 일조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기존침해지점 개소수 변화를 함께 파악하여야 함

〈표 15〉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지점 개수

일조분석결과	*학교명	
	사업 전	사업 후
예측지점 개수(개)	00	00
총일조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기존침해지점 개수(개)	00	00
사업시행 이후 기존침해지점의 총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지점의 개수(개)		00

☑ 기존침해지점에서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분석되어야 함

- 기존침해지점은 [그림 41]과 같이 창문이 바라보는 방위에 따라 구분되고, 인근 건축물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북동 또는 북서방위로 인해 창문의 일조시간이 총 일조시간 4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외 남쪽창으로 구분해 분석해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그림 41] 방위별 기존침해지점 일조침해 판정방법

- <표 16>과 같이 총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전/후 결과와 추가일조방해시간, 창문의 방위, 전체 일조 방해 시간, 종전부터 있던 방해 시간을 제시하고 (수식1), (수식2)를 적용해 전체 일조방해 시간에 대한 일조 감소율, 종전부터 있던 일조 방해시간에 대한 일조 감소율을 산출해 제시하여야 함

$$\frac{\text{추가일조방해시간}}{480(\text{분}) - \text{사업시행후 일조시간}} \leq \text{전체일조방해시간}(1/4) \text{-----} (\text{수식1})$$

$$\frac{\text{추가일조방해시간}}{480(\text{분}) - \text{사업시행전 일조시간}} \leq \text{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1/3) \text{-----} (\text{수식2})$$

- <표 16>의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사업시행 이전부터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고, 신규사업으로 인해 1시간 미만으로 총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지점을 나타냄
- <표 16>의 회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수식1과 수식2를 모두 만족하지 못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지점을 나타냄

〈표 16〉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 분석 결과

행	열	전	후	추가 일조 방해 시간	전체 시간	전체 일조 방해 시간 (전체시간 기준 사업 후 방해하는 시간)	종전부터 있던 방해 시간 (전체 시간 기준 원래 방해 하던 시간)	25%	33.33%	방위
		총일조 시간	총일조 시간					전체 일조 방해 시간에 대한 일조 감소율	종전부터 있던 일조 방해 시간에 대한 일조 감소율	
		08시 ~ 16시	08시 ~ 16시							
1	1	3:19:48	2:49:46	0:30:02	8:00:00	5:10:14	4:40:12	10%	11%	북서
1	10	0:04:15	0:00:53	0:03:22	8:00:00	7:59:07	7:55:45	1%	1%	북서
2	11	0:10:53	0:06:23	0:04:30	8:00:00	7:53:37	7:49:07	1%	1%	북서
3	11	0:11:43	0:07:13	0:04:30	8:00:00	7:52:47	7:48:17	1%	1%	북서
4	11	0:14:16	0:07:13	0:07:03	8:00:00	7:52:47	7:45:44	1%	2%	북동
5	11	0:19:05	0:07:13	0:11:52	8:00:00	7:52:47	7:40:55	3%	3%	남동
7	1	0:39:20	0:05:56	0:33:24	8:00:00	7:54:04	7:20:40	7%	8%	남동
7	2	4:55:32	2:18:39	2:36:53	8:00:00	5:41:21	3:04:28	46%	85%	북동
8	7	3:12:15	0:45:52	2:26:23	8:00:00	7:14:08	4:47:45	34%	51%	북동
10	2	2:26:40	0:16:28	2:10:12	8:00:00	7:43:32	5:33:20	28%	39%	북동
10	3	4:19:40	1:59:38	2:20:02	8:00:00	6:00:22	3:40:20	39%	64%	북동
10	4	4:40:29	2:26:49	2:13:40	8:00:00	5:33:11	3:19:31	40%	67%	북동

2. 크기 및 외형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크기 및 외형	교지 면적	신설	법정 교지면적을 만족하고 있는가?	학교시설의 학생 수, 학급 수, 교지면적 등의 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학교별 법정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학교시설의 학생수, 학급수, 교지면적 등의 도표(<표 17>)

■ 검토시 주의사항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관련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을 검토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②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③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④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⑤ 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장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름

- 학생수, 학급수 등 학교설립계획을 제시하고, ①~④에 정하는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교사 기준면적, 체육장 기준면적을 산출하여 도표로 분석
 -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표 17>과 같이 해당학교 기준에 음영으로 표시하고, 학생수를 반영한 계산과정을 표 안에 기입
 - 기준 ⑤의 경우, 이용가능한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과 완화하고자 하는 체육장 면적 기술

〈표 17〉 교사의 기준면적 및 산출과정의 예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1,680 + 3×1,000 = 4,680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1,800 + 4×800 = 5,000
고등학교·고등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 주)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0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0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료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1] <개정 2017.12.29.>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크기 및 외형	교지 형태	신설	교지형태가 정형인가?	교지형태 및 학교 배치 예측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배치가 가능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교지형태 및 학교 배치 예측도

■ 검토시 주의사항

- 교지의 '정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학교용지 장변방향, 장단변비, 세장비, 정형성 등 대지형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도표, 도면으로 제시하고 정형화된 대지형태를 가지고 남향 중심의 교사배치가 가능한지 교육청 유관부서와 협의 필요
- 교지의 형태가 부정형한 경우 북측에 교사, 남측에 옥외체육장 배치가 어렵고, 교지와 옥외체육장의 위치가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 교사의 음영으로 인해 옥외체육장에 자체침해가 발생해 법적 일조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움

3. 지형 및 토양환경

1) 지형 및 경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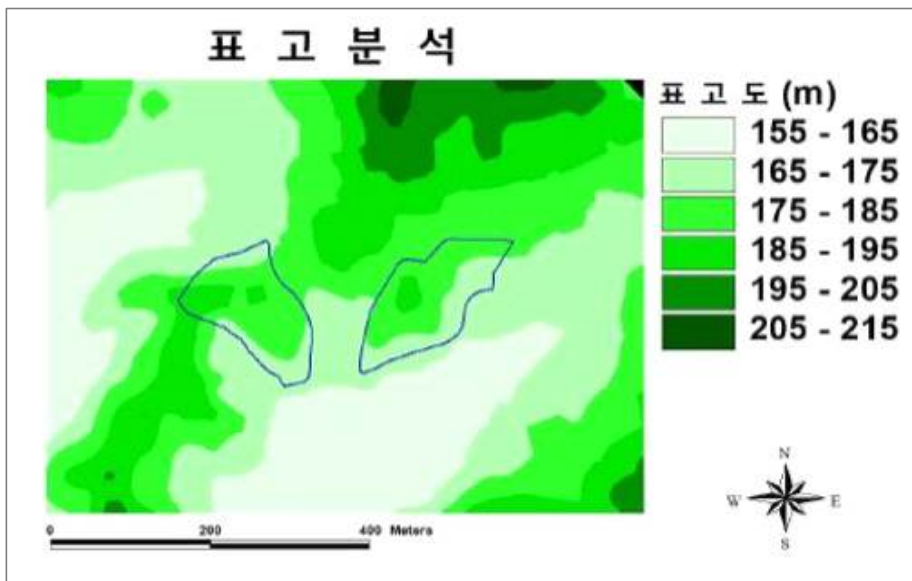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지형 및 토양 환경	지형 및 경사도	신설	학교용지 경계가 표시된 표고 분석도와 경사도 분석도, 학교용지 부지조성 계획과 지반특성 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부지조성계획도, 표고 분석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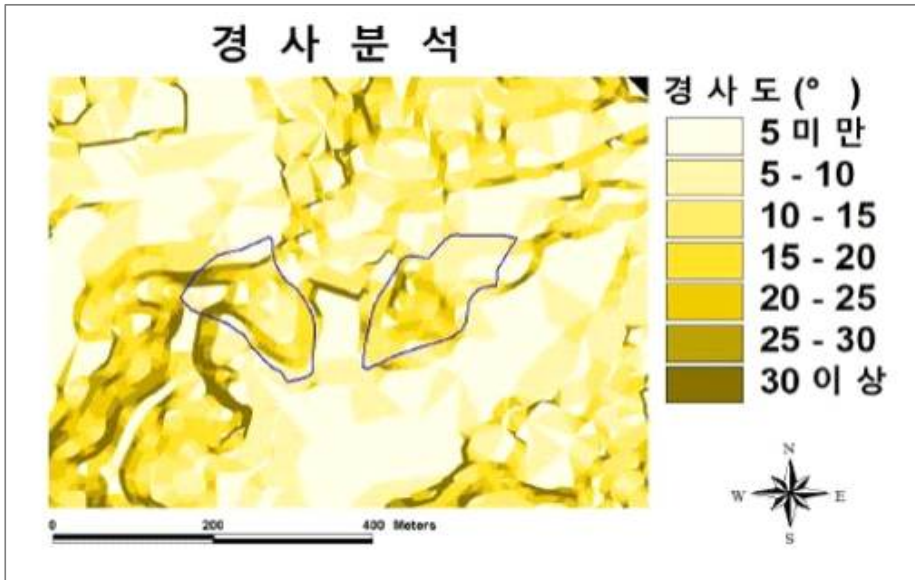
- ☑ 지반이 평탄해야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교사의 설치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표고의 분포와 경사도 분포 확인 필요

■ 필수 검토 자료

- ☑ 부지조성계획도, 표고 및 경사 분석도



[그림 42] 지도를 이용한 표고 분석의 예시



[그림 43] 지도를 이용한 경사 분석의 예시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구간별 중·횡단면도(계획고, 부지내 경사도 등)를 도면으로 제시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를 예측·기술한 자료 제시 여부 확인
- ☑ 「교육환경법」에서 구체적인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학교 용지 경계가 표시된 표고 분석도, 경사도 분석도,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과 지반특성 조사 자료 등을 받아 심의 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2) 풍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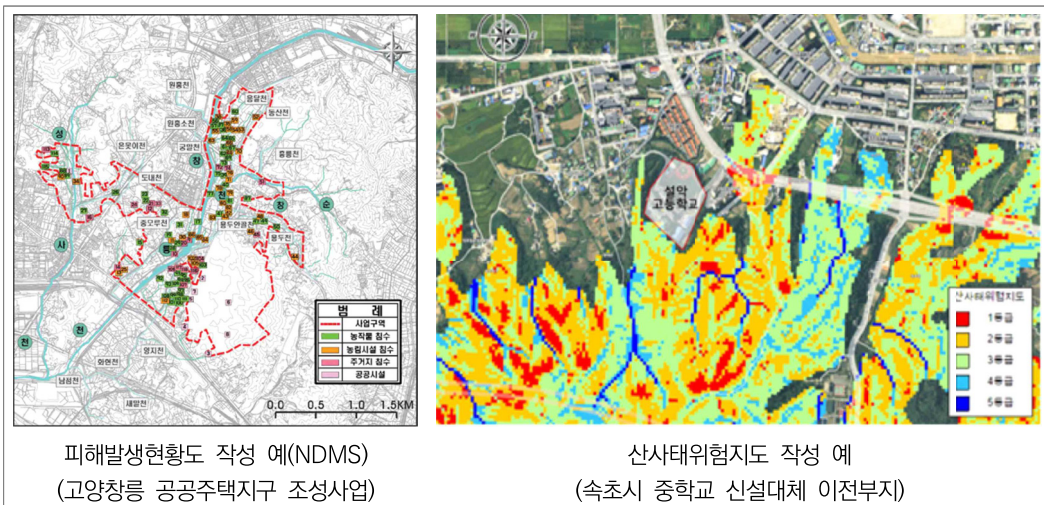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지형 및 토양 환경	풍수해	신설	과거 10년간 풍수해 등 재해이력이 있는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 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구역 지정현황을 제시하였는가?	홍수범람구역현황,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수해상습지 현황, 산사태위험지구 현황, 지진발생 현황, 하천의 계획홍수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최근의 재해연보(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 제시 검토
-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인접지역의 피해년도, 피해 원인, 피해내용(농작물 침수, 농림시설 침수, 주거지 침수 등), 피해위치, 피해금액, 복구 현황 등이 도면과 도표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
- ☑ 학교용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하여 침수, 홍수, 산사태 등 재해이력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 구역(홍수범람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수해상습지, 산사태위험지구 현황, 지진발생 현황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 시 재해 위험 가능성을 예측·기술하였는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자료), 홍수범람구역 현황,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수해상습지 현황, 산사태위험지구 현황, 지진발생 현황, 하천의 계획, 홍수위 현황자료 검토



[그림 44] 풍수해 검토자료 예시1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 및 인접 지역이 재해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용지 위치를 변경하여야 함

- ☑ 인접한 하천이 있을 경우 계획홍수위를 고려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가능성을 저감하고 입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 학교용지가 해안, 수변공원, 하천, 저수지 등의 매립지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용지 및 인접 지역의 연약지반 분포특성을 조사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지반안정화 대책,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	×
지형 및 토양 환경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했던 사업부지 인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사업부지 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학교용지의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자료, 지목현황을 도표, 도면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고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수록 여부 검토
-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을 사용했던 부지인지를 검토
- ☑ 폐기물처리장,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부지인지를 검토
-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의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예측·평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용지 및 인근지역의 지목현황을 도표 및 도면 검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이력 자료 검토



[그림 45] 풍수해 검토자료 예시2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 및 인접 지역은 현재 토양오염 우려시설이 없거나 위치한 이력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 학교용지가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용지를 기준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의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4) 토양환경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지형 및 토양 환경	토양 환경	교지가 과거 오염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닌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 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기준 이하인가?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 기준에 적합한가?	도면/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학교용지를 기준으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측정을 실시했는지 여부 검토
- ☑ 측정결과를 도면, 도표로 제시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만족 여부를 기술했는지 여부 검토
- ☑ 측정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23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토양오염 23개 항목 측정결과 도면과 도표자료, 시험성적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혹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시료의 채취 및 분석방법 자료 검토



[그림 46] 토양측정지점 위치도 및 현장측정 사진 예시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 및 인접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한 개 이상의 측정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학교용지가 해안, 수변공원, 하천, 저수지 등의 매립지에 위치하는 경우 매립 후 학교용지 및 인접 지역의 토양오염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4. 대기환경

1) 대기질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대기질	공통	교지 내 또는 주변의 대기 현황농도 조사 결과가 환경기준값 이하인가?			학교 위치도 및 측정(조사)지점 위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 기준	24H	1Y			
			PM ₁₀ [$\mu\text{g}/\text{m}^3$]	100	50			
			PM _{2.5} [$\mu\text{g}/\text{m}^3$]	35	15			
			NO ₂ [ppm]	0.06	0.03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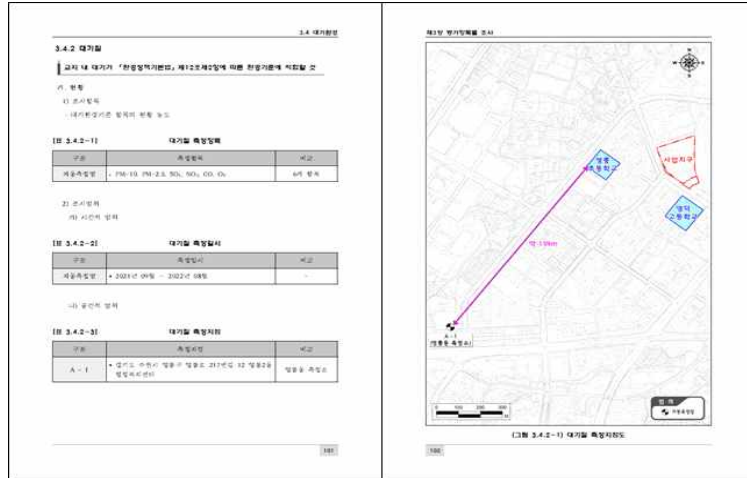
- 각 자료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표 18〉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항목	기준(평균)			
	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미세먼지(PM ₁₀)	50 $\mu\text{g}/\text{m}^3$ 이하	100 $\mu\text{g}/\text{m}^3$ 이하	-	-
초미세먼지(PM _{2.5})	15 $\mu\text{g}/\text{m}^3$ 이하	35 $\mu\text{g}/\text{m}^3$ 이하	-	-
이산화질소(NO ₂)	0.03 ppm 이하	0.06 ppm 이하	-	0.1 ppm 이하
아황산가스(SO ₂)	0.02 ppm 이하	0.05 ppm 이하	-	0.15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	-	9 ppm 이하	25 ppm 이하
오존(O ₃)	-	-	0.06 ppm 이하	0.1 ppm 이하
납(Pb)	0.5 $\mu\text{g}/\text{m}^3$ 이하	-	-	-
벤젠(Benzene)	5 $\mu\text{g}/\text{m}^3$ 이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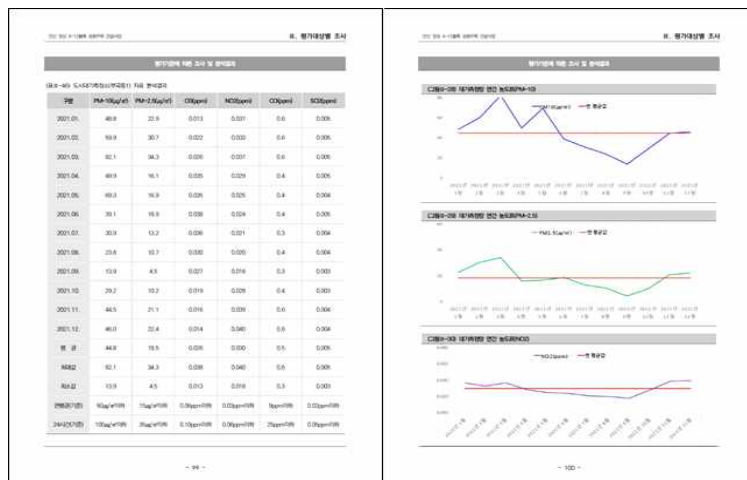
필수 검토 자료

- ☑ 국가대기측정망 자료를 제시한 경우, 해당 측정망의 위치(주소), 사업지구 및 교지 경계와의 이격거리 등 측정망 자료의 제시 여부 확인(표 또는 도면 제시)



[그림 47] 국가대기측정망 현황 조사 작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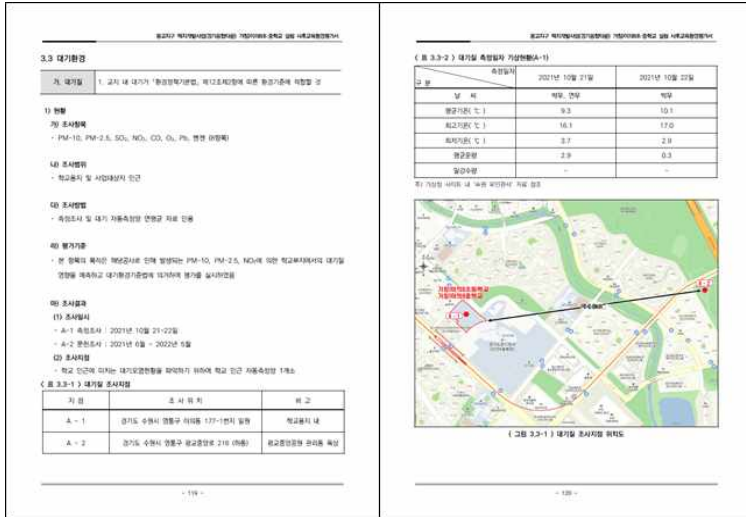
- ☑ 국가대기측정망 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요 대기오염물질 항목(PM₁₀, PM_{2.5}, NO₂)에 대한 평균 및 최대 농도 값(월간, 연간)의 제시 여부 확인(표 또는 그래프로 제시)



[그림 48] 국가대기측정망 조사 자료(월 측정) 작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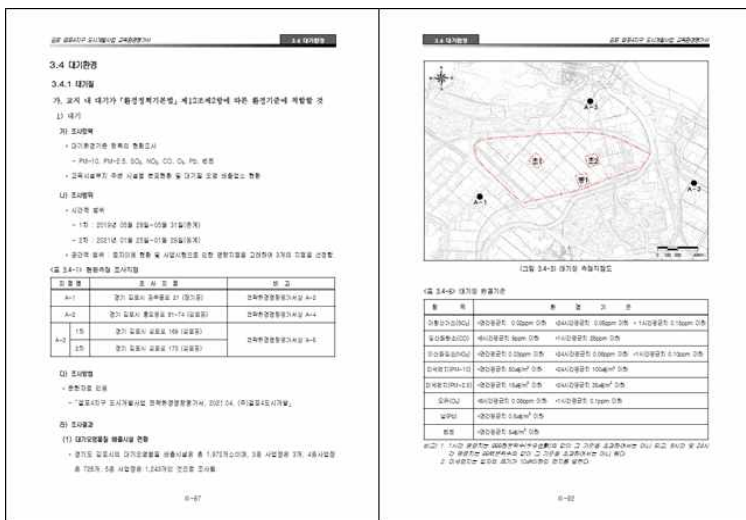
- 8) 주요 대기오염물질 항목은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여 주변 대기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단지, 연구시설 등 운영 시 기타 기준선 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등이 배출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항목을 확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 대기질 현장측정 자료를 제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8개 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등의 제시 여부 확인(일부 항목의 조사가 누락된 경우, 누락에 대한 사유 제시 여부 검토)



[그림 49] 대기질 현장측정 지점 제시 자료 작성 사례

- ☑ 기존 문헌자료를 인용한 경우, 승인된 문헌자료(환경영향평가서, 교육환경평가서 등)를 통해 해당 지역 내 대기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 여부 확인(출처 등 해당 근거자료가 부록에 함께 제시되어야 함)



[그림 50] 문헌자료 출처 제시 및 대기질 측정지점도 작성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측정망 자료 활용 시에는 사업지구 또는 교지(校地) 경계로부터 최인접(4km 이내)한 측정망의 자료를 활용하되, 최근 1년의 자료(ex. 2021.01.~2021.12. 또는 2021.09~2022.08.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최근 농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고려
 - 최근 1년 이전의 자료도, 최근 1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
- ☑ 기존학교 평가 시에는 측정망 자료를 우선으로 제시하되, 기존 문헌자료를 인용하거나 교지 내 대기질 현장측정 자료를 가능한 함께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설학교 평가 시에는 교지 내 대기질 현장측정 자료를 우선으로 제시하되, 기존 문헌자료를 인용하거나 측정망 자료를 가능한 함께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신설학교 평가에서, 기존 문헌자료를 인용하거나 측정망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는 학교 설립예정지 주변에 대기오염유발원이 없다는 조건 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
 - 공통적으로, 대기질 현황 자료는 측정소 및 기존 문헌자료, 교지 내 현장측정 자료가 함께 제시되도록 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 (참고) 측정망 자료의 경우, 대기환경기준 중 총 6항목(미세먼지(PM₁₀), 초미세먼지(PM_{2.5}), 이산화질소(NO₂),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납(Pb) 및 벤젠의 경우 현장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대기질	기존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지 내 대기 영향예측 결과가 환경기준값 이하 인가?		저감효율 산출자료, 저감방안 적용 후 대기질 예측농도 결과, 예측 모델 입출력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기준	24H				1Y
			PM ₁₀ [μg/m ³]	100				50
			PM _{2.5} [μg/m ³]	35				15
			NO ₂ [ppm]	0.06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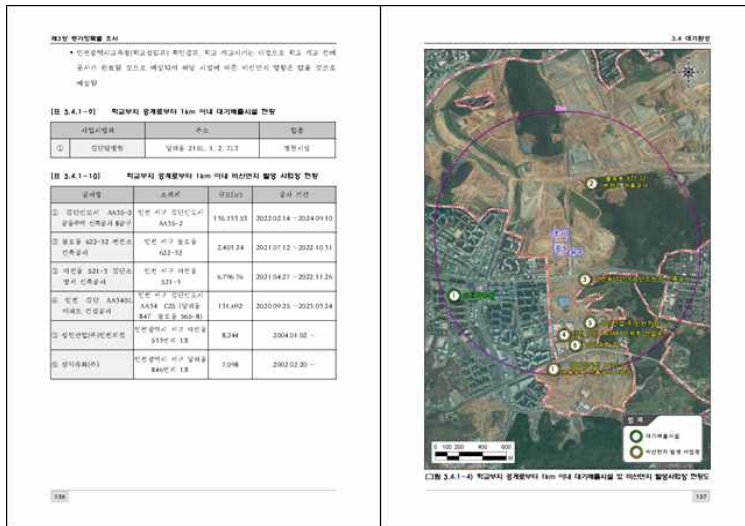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대기질	공통	대기오염유발원을 조사하였는가?	조사 근거자료, 조치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대기환경과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대기오염유발원 및 민원사항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발행물 등을 통해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검토 시 조사 내용과 조사 출처 및 근거의 제시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까지인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유발원 조사 결과의 제시 여부와 해당 조사의 근거자료(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및 회신 원문, 국가 및 지자체 간행물, 발행물(국가통계, 지역통계, 현황자료) 등)에 대한 평가서 첨부 여부 확인 필요



[그림 52] 대기오염유발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사 결과 작성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의 취지는 학교용지 주변의 대기오염유발원의 존재 여부 및 민원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존재로 인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확인 하여, 해당 부지가 학교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향후 예상 치 못한 대기질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교육환경 영향 발생에 따른 해당 영향의 인과관 계를 추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함
- ☑ 따라서,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의 대기질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대기질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대기질	기존	대기질 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조사 근거자료, 조치계획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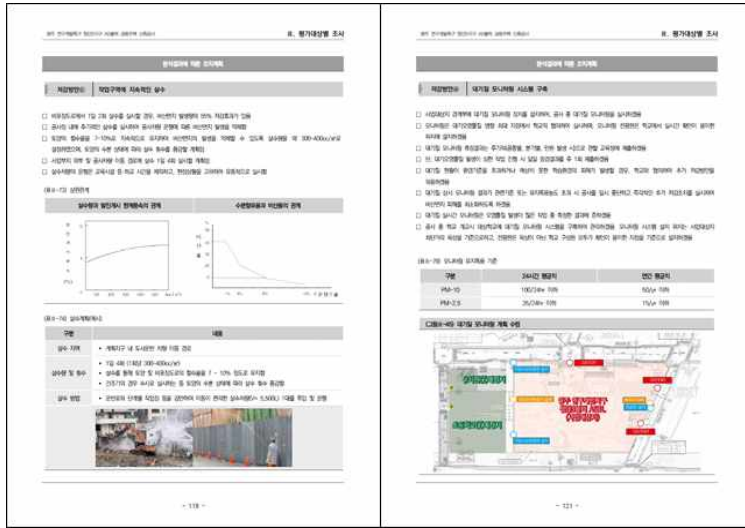
- ☑ 저감방안 적용 후의 대기질 영향 수준(농도)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만족 여부 검토 확인

■ 필수 검토 자료

- ☑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방안의 제시 여부와 각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의 제시 여부를 검토 필요

■ 검토시 주의사항

- ☑ 저감방안별 저감효율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효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저감효율이 평가서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 다만, 광범위한 지역 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측정 지점이나 시점별로 다양한 농도로 나타날 수 있는 대기질의 특성상 다양한 저감방안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53]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공공장 내 살수, 대기질 모니터링) 작성 사례

2) 약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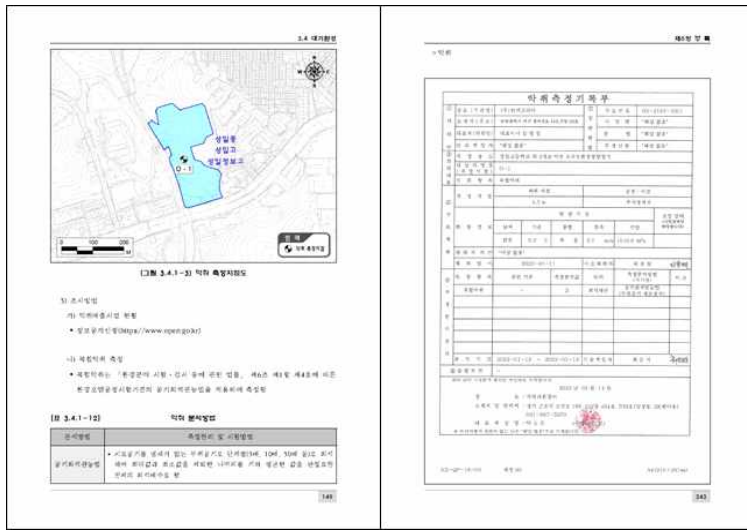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약취 학교용지 주변의 복합약취(희석 배수)가 평균 15이하로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가?	학교 위치도 및 측정지점 위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복합약취(희석배수)가 평균 15이하로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교지(校地) 내 약취의 현황농도는 교지 내 약취 현장측정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주변 1km 반경 내에 약취유발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 기존 승인된 문헌자료 인용 등을 통해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필수 검토 자료

- ☑ 약취 현장측정 자료를 제시한 경우, 교지를 기준으로 복합약취(희석배수) 측정 지점과 측정 결과의 제시 여부를 확인 필요(시험성적서 등 근거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는지 확인)



[그림 54] 학교용지 기준 약취 측정지점 및 측정 결과(시험성적서) 작성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용지 주변에 약취유발원 존재가 확인된 상황에서 학교용지 기준으로 약취 측정결과가 복합약취(희석배수)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입지하거나 기타 지정약취물질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정약취물질(「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참고)의 측정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 또한, 학교용지 주변에 다수의 약취유발원 또는 약취배출시설이 입지한 경우, 약취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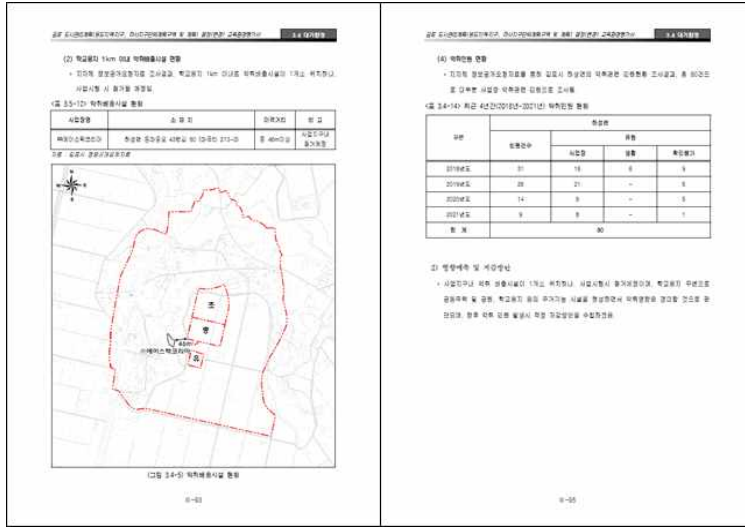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약취	신설	약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및 약취 유발원을 조사하였는가?	조사 근거자료,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설	약취와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약취유발원 및 민원사항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발행물 등을 통해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검토 시 조사 내용과 조사 출처 및 근거의 제시 여부를 확인 필요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까지인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유발원 조사 결과의 제시 여부, 해당 조사 근거자료(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및 회신 원문, 국가 및 지자체 간행물, 발행물(국가통계, 지역통계, 현황자료) 등)의 평가서 첨부 여부 검토 필요



[그림 55]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민원 조사 현황 작성 사례

검토시 주의사항

-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의 취지는 학교용지 주변의 악취유발원의 존재 여부 및 민원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존재로 인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확인하여, 해당 부지가 학교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향후 예상치 못한 악취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등 교육환경 영향 발생에 따른 해당 영향의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의 악취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하절기 악취 영향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악취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3) 소음 및 진동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소음 및 진동	공통	소음·진동 유발원(복합영향) 및 소음·진동도 현황측정을 분석하였는가?	소음·진동 유발원 조사 현황도 및 소음·진동도 측정지점 위치도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도 목표기준 설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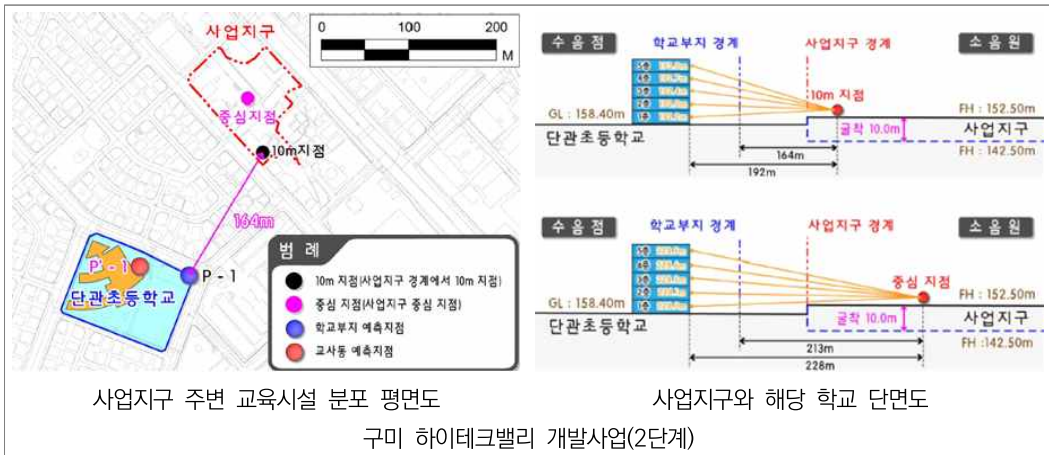
- 소음·진동 유발원(복합영향) 및 소음·진동도 현황측정 자료에 대하여 도표 및 도면 검토
-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 소음·진동도 현황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지점은 학교용지 경계 선상의 도로변지역과 교사동을 지점으로 선정
- 소음·진동도 환경목표(용지경계선 65.0dB(A), 교사동 55.0dB(A), 발파 시(0.2Kine/65.0dB(A))기준 설정 확인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소음·진동 유발원(복합영향 포함) 분포자료 및 지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 및 단면도 자료, 측정지점 위치도, 환경목표기준 도표 검토
- 사업지구 면적이 5,000㎡ 이하일 경우 소규모로서 사업지구경계지점 만을 표시하였는지 검토

■ 검토시 주의사항

-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측정지점별, 측정시간대별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는지 확인필요
- 결과 제시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당해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는지 확인필요
- 조사지점별 소음·진동도 현황을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하였는지 확인필요



[그림 56] 사업지구 주변 교육시설 분포 평면도 및 단면도 사례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소음 및 진동	기존	공사·운영 시 소음·진동도 예측을 수행하였는가?	도표/도면, 시추주상도(굴착깊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공종별 투입장비 종류 및 소요대수가 적정성 여부 검토

- 공종은 철거공, 토공, 기초공(파일공), 지하층공, 구조물공(콘크리트공), 포장공, 발파공으로 분류 검토(사업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하지 않는 공종은 제외)
- 공종별 기본적인 투입장비를 선정하고 덤프트럭과 레미콘 믹서 장비는 실작업장비와 대기차량을 고려하여 2대 투입을 원칙
- 공사 시 유입 덤프트럭 및 레미콘 믹서 장비에 의한 대상 학교의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NIER)식 혹은 LH·KEI식을 이용하여 시간당 통제 가능한 차량대수 산정(+3dB(A) 증가하는 대형차 차량 대수 산정)

구분	장비명	제원		투입대수	1/1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Hz)							
		동력	RPM		63	125	250	500	1k	2k	4k	O.A
철거공	굴삭기	180	2100	1	113.70	104.80	97.90	95.30	94.50	92.10	88.40	112.11
	압쇄기	180	-	1	113.70	104.80	97.90	95.30	94.50	92.10	88.40	112.11
	덤프트럭	-	1800	2	109.81	102.61	93.01	92.91	95.91	91.51	83.91	110.92
토공	굴삭기	180	1800	1	113.70	104.80	97.90	95.30	94.50	92.10	88.40	112.11
	벌도저	100	2200	1	112.30	105.70	101.90	96.70	98.20	96.80	92.20	113.81
	브레이크	720 (Kg)	-	1	106.30	110.10	112.80	112.00	112.50	110.80	07.60	119.29
	덤프트럭	-	-	2	109.81	102.61	93.01	92.91	95.91	91.51	83.91	110.92

공중별 장비투입에 따른 음향파워레벨

구분	고통량 (대/시)	속도 (Km/hr)	이격거리(m)		
			차도폭	경계	교사
영리차	현행	974	10.2	33.0	50.0
	공사시	1,364 ^(=974+10×39)			

첨두시 차종별 유발교통량에 따른 소음예측

구분	도로	대상학교	구분	학교 경계선		현행 공사차량 투입시
				최하층	최상층	
관악로	서울봉현초		현행	51.7	48.5	50.9
			공사차량 투입시	54.6	51.4	53.8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그림 57] 공중별 투입장비 및 첨두시 덤프트럭 및 레미콘믹서 차량대수 산정 사례

☑ 공사 시 소음은 반자유 공간에서 점음원 거리 감쇠식을 이용하여 예측을 수행하였는지 검토하고 진동은 점음원 거리 감쇠식을 이용한 합성진동도를 산정하여 예측을 수행하였는지 검토

- 공중별 해당 장비별 음향파워레벨을 “작성 가이드라인 기준학교”의 참고 1(소음예측 참고자료)을 이용하여 제시했는지 검토
- 장비별 음향파워레벨에 A-Weighting 보정값을 적용하여 중심주파수별 음향파워레벨을 산정하였는지 검토

구분	장비명	제원		투입대수	1/1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Hz)							
		RPM	대수		63	125	250	500	1k	2k	4k	O.A
철거공	굴삭기	1800	1	94.3	91.2	89.1	86.9	87.4	84.5	81.4	98.0	
	압쇄기	1800	1	94.3	91.2	89.1	86.9	87.4	84.5	81.4	98.0	
	덤프트럭	-	2	109.8	102.6	93.0	92.9	95.9	91.5	83.9	110.9	
	공중별 음향파워레벨			83.8	87.1	87.0	91.5	97.0	94.2	88.2	100.4	

A-Weighting 보정

주파수	63	125	250	500	1K	2K	4K
보정	-26.2	-16.1	-8.6	-3.2	0	1.2	1.0

$$SPL = PWL - 10 \log(2\pi r^2) = PWL - (20 \log r + 10 \log 2\pi)$$

$$= PWL - 20 \log r - 8$$

구분	공종	1/1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Hz)							
		63	125	250	500	1k	2k	4k	O.A
철거공		44.4	47.7	47.6	52.0	57.6	54.7	48.7	61.0
토공		46.7	50.6	55.8	61.0	65.1	63.9	59.6	69.3
발파공		39.7	52.0	55.6	61.6	66.3	65.6	67.9	72.1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그림 58] 공사시 소음예측 사례(반자유 공간에서 점음원 거리 감쇠식 적용)

- ☑ 지반조사보고서 중 시추주상도를 이용하여 굴착깊이를 검토하여 발파작업의 수행 여부 파악
 - 발파소음 예측은 폭풍압 예측식을 이용한 소음레벨 환산식을 적용하여 예측을 수행하였는지 검토
 - 발파진동 예측은 미 광무국식과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와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예측을 수행하였는지 검토

폭풍압 예측식			발파 소음 예측					
$P = 181.36 \left[\frac{R}{H^{2/3}} \right]^{-1.2}$			미진동 굴착방법 (TYPE I)		정진동 예발파 (TYPE II)		소규모동 제형파 (TYPE III)	
번호	정원시설	거리	0.01kg	0.1kg	0.2kg	0.49kg	1.0kg	1.5kg
1	초등학교	28.0 m	65.4	76.4	78.8	81.9	84.4	85.8
		38.0 m	65.2	73.2	75.6	78.8	81.2	82.6
		48.0 m	62.8	70.8	73.2	76.3	78.8	80.2
		58.0 m	60.8	68.8	71.2	74.3	76.8	78.2
		68.0 m	59.2	67.2	69.6	72.7	75.2	76.6
		78.0 m	57.7	65.7	68.1	71.3	73.7	75.1

발파진동 예측식			발파 진동 예측					
$V = 160 \left[\frac{D}{H^{1/2}} \right]^{-1.4}$			미진동 굴착방법 (TYPE I)		정진동 예발파 (TYPE II)		소규모동 제형파 (TYPE III)	
번호	정원시설	거리	0.01kg	0.1kg	0.2kg	0.49kg	1.0kg	1.5kg
1	초등학교	28.0 m	0.02	0.12	0.21	0.44	0.77	1.07
		38.0 m	0.01	0.08	0.13	0.27	0.47	0.66
		48.0 m	0.01	0.05	0.09	0.18	0.33	0.45
		58.0 m	0.01	0.04	0.07	0.14	0.24	0.33
		68.0 m	0.00	0.03	0.05	0.11	0.19	0.26
		78.0 m	0.00	0.02	0.04	0.08	0.15	0.21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와의 상관관계			발파소음 예측 및 발파진동 예측					
$VZ = 20 \cdot \log(V_{peak}) + 10 \cdot \log(1 - e^{-Z/0.63}) + 85$			미진동 굴착방법 (TYPE I)		정진동 예발파 (TYPE II)		소규모동 제형파 (TYPE III)	
번호	정원시설	거리	0.01kg	0.1kg	0.2kg	0.49kg	1.0kg	1.5kg
1	초등학교	28.0 m	65.4	76.4	78.8	81.9	84.4	85.8
		38.0 m	65.2	73.2	75.6	78.8	81.2	82.6
		48.0 m	62.8	70.8	73.2	76.3	78.8	80.2
		58.0 m	60.8	68.8	71.2	74.3	76.8	78.2
		68.0 m	59.2	67.2	69.6	72.7	75.2	76.6
		78.0 m	57.7	65.7	68.1	71.3	73.7	75.1

[그림 59] 발파소음·진동 예측식 및 사례

- ☑ 공사 시 유입교통량 및 운영 시 진동 예측식(일본 건설성 토목연구소 제안식)을 적용하여 예측 진동도 산정하였는지 검토
- ☑ 운영 시(사업완료 후) 증가되는 교통량에 의한 소음도 예측을 수행하였는지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NIER)식 지양(바람직 하지 않음) : 68.7%의 정합성
 - LH·KEI식 : 76.5%의 정합성(사용가능)
 - SoundPlan, Cadna-A(RLS90 식) : 82.7~85.2%의 정확성(추천권고)

■ 필수 검토 자료

- ☑ 공사 시 소음도 예측값과 대상 학교 도로변지역 소음도 측정값이 ±3dB(A) 이내 인지 검토
- ☑ 공사 시 통학안전 분야에 공사장 진·출입구를 고려한 공사차량 통행로 자료 확인
 - 대상 학교 인접하여 통과 시 덤프트럭, 레미콘 믹서 시간당 통제 가능 대수 산정 (+3dB(A) 증가하는 대형차 차량 대수 산정 ; NIER식 활용)

- ☑ 운영 시 현황 교통량을 이용하여 소음도 실측값과 예측 결과값의 차이가 $\pm 3\text{dB(A)}$ 이내 인지를 검토
 - 실측 소음도값(57.0)과 소음도 예측값(55.0)의 비교 검토 : 2dB(A)
 - 현재의 교통량을 적용한 현재 소음도와 사업시행 후 예측소음도 비교 검토 : 0.9dB(A)
- ☑ 발파 시 소음·진동 예측 관련자료 검토
 - 굴착깊이가 보통암, 연암, 경암의 위치까지 도달하는지 여부 검토

■ 검토시 주의사항

- ☑ 공사 시 유입차량(덤프트럭 및 레미콘 믹서)에 의한 해당 학교 소음·진동도 예측의 경우, 통학안전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검토하여 대상 학교와 충분한 이격거리로 인하여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예측을 생략
- ☑ 운영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도 예측 시 500~1,000세대 이하는 예측을 생략하고 지역·주변여건과 상업지역을 고려하여 예측 수행을 권고
- ☑ 소규모 사업장에 발파공사의 경우, 인접주변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진동공법(할암 공법 등)을 권고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소음 및 진동	기존	공사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는가?	회절감쇠치 산정식,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단일회절의 경우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 15dB 적용 여부 검토
- ☑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이중회절을 적용할 경우, 가설방음판넬의 투과손실 15dB와 공기 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투과손실 13dB의 합성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 17dB 적용 했는지 여부 검토
 - 이중회절 적용 시 대상 학교 차폐가 가능하도록 연장(길이)을 검토

- 소규모 사업구역으로서 대상면적이 5,000㎡ 이하일 경우, 이중회절 적용을 지양하고 단일회절로 검토하여 높이와 연장을 검토하고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은 개별 장비에 적용토록 권고

☑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장비 검토

- 사업지구 가설방음판넬 설치지점 : 대상 학교 맞은편에 설치(가설방음판넬 상단 0.3~1.0m의 높이로 설치)
- 대상 학교 설치지점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한 교사동 옥상 상단에 높이 0.3~1.0m의 높이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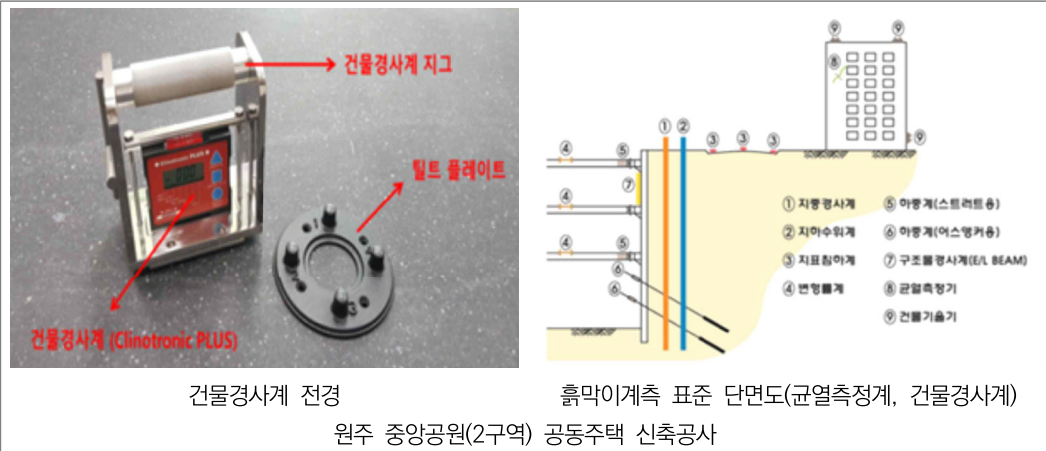


(출처 : 박영민 외 1인(2013),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제23권제12호)

[그림 60] 실시간 소음 마이크로폰 설치 사례

☑ 실시간 진동가속도계 및 계측기(경사도 측정계, 균열 측정계) 모니터링 장비 검토

- 사업대상지와 대상학교 사이에 도로가 위치하며, 사업지구와 교사동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일 경우 적용 검토
- 발파작업 시 굴착깊이가 10.0m 이상이고 교사동과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일 경우 적용 검토



[그림 61] 건물경사계와 균열측정계 설치 사례

- ☑ 고층(상층)부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 검토
 - 갱풍 시스템, 흡방음 4중커튼, 판도라공법, 드롭다운공법, 소음저감용 매트 등 조합 시스템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공법을 동시에 적용토록 권고
- ☑ 목표기준 초과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 검토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대형이동식 방음천막, 풍선형 방음벽, 소음저감 브레이커, 엔진방음 덮개 등 설치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사업지구 대상면적이 5,000㎡ 이하일 경우, 이중회절 적용을 지양(바람직하지 않음)하고 단일회절로 검토하여 높이와 연장을 검토하고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은 개별 장비에 적용토록 권고
 - 사업지구 면적, 단일회절 삽입손실치 식, 이중회절 삽입손실치 식 검토
- ☑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장비와 고층부 공사 시 저감방안은 사업지구와 대상 학교 사이에 장애물(연립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등)이 위치 하고 150m 이격 시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사업지구와 대상 학교 사이에 장애물 검토(현장조사 및 위성지도 이용)
- ☑ 공사 시 저감방안 총괄도면 검토



[그림 62] 저감방안 총괄도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굴착깊이 10m 이상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를 통한 흠막이 공법 및 계측기 설치지점 위치도를 본 교육환경평가서에 제시하였는지 검토
- ☑ 사업지구와 대상 학교(교사동)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상일 경우 : 단일회절 적용 권고
- ☑ 사업지구와 대상 학교(교사동)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내일 경우 : 이중회절 적용 권고
-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은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토록 권고(단, 소규모 사업장 제외 가능)
-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이동식대형 방음천막, 엔진룸 방음덮개는 해당되는 장비에 한하여 저감효과를 적용하여 공사 시 예측 소음도 검토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소음 및 진동	신설	운영 시 소음·진동도 예측을 수행하였는가?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운영 시(사업완료 후) 증가되는 교통량에 의한 소음도 예측을 수행하였는지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NIER)식 지양(바람직 하지 않음) : 68.7%의 정합성
 - LH·KEI식 : 76.5%의 정합성(사용가능)
 - SoundPlan, Cadna-A(RLS90 식) : 82.7~85.2%의 정확성(추천권고)
- ☑ 신설학교의 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소음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예정지 건축이격 3.0m를 기준으로 운영 시 소음도 예측 검토
- ☑ 운영 시 도로교통량에 따른 소음도 예측값이 학교용지 경계선상에서 65.0dB(A)와 교사 내 소음기준 55.0dB(A)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토
- ☑ 운영 시 도로교통량에 따른 진동영향 예측식(일본 건설성 토목 연구소 제안식)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2D - Model(NIER, LH·KEI식 등) : 장래 첨두시 교통량 자료, 대상사업지와 학교와의 이격거리 단면도, 평균속도, 평균주행 속도 검토
- ☑ 3D - Model(SoundPlan, Cadna-A 등) : 지형자료, 계산격자(10m×10m), 교통량 및 도로제원, 영향예측지점(교육시설 층수 및 이격거리) 검토
- ☑ 일본 건설성 토목 연구소 제안식 입력자료 검토

■ 검토시 주의사항

- ☑ 교통영향평가(혹은 교통성검토) 변화가 없을 경우, 환경평가 시 예측을 수행했던 운영 시 소음도 예측값 제시가 가능함
- ☑ 운영 시 소음도 예측결과, 도로변지역(공동주택 기준) “가” 및 “나”지역 주간 소음도 기준 65.0dB(A)과 교사 내 소음기준 55.0dB(A)를 초과할 경우, 구체적인 저감방안(영구 방음벽, 저소음포장공법 등)을 수립하여 제시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대기 환경	소음 및 진동	신설	운영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는가?	회절감쇠치 산정식 도표/도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운영 시 영구방음벽 설치 전·후 예측소음도 검토
- 영구방음벽 높이 및 길이(연장) 산정 검토
 - 영구방음벽 검토 시 Transmission Loss 20dB 적용하였는지 검토
- 운영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 검토
 - 영구방음벽 외에 저소음포장, 방음림, 방음독, 간섭장치, 직각배치 등 제시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운영 시 영구방음벽 설치지점 위치도 확인(높이와 연장 확인)
- 저소음 포장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행주체 및 관리 책임주체 검토

■ 검토시 주의사항

- 영구방음벽 설치 시 주변적인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흡음형 방음벽 혹은 반사형 방음벽, 혼합형 방음벽 등에 대한 설치 계획 수립 권고
- 저소음 포장의 시행주체 및 관리 책임주체를 본 교육환경평가서에 명시토록 권고

5. 주변 유해환경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주변 유해 환경	금지 행위 및 시설	공통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법 제 9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거나 또는 설치 계획이 있는가?	금지행위 시설 목록, 금지행위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금지행위 및 시설 평가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구역) 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입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 따라서, 관할 교육청 협조 또는 지자체 정보공개 요청,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한 금지행위 및 시설 조사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용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구역의 조사·제시 여부 검토
- ☑ 평가서 검토 시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확인된 경우, 지역교육환경 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학교용지 위치의 변경없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철거·이전을 예정한 경우에는 개교 전까지 철거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철거 일정, 관련 근거서류(이전 또는 폐업 협약서 등)의 제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림 63]과 같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철거를 예정한 경우이며, 관련 근거서류(철거 협약서)를 제출하여 학교용지의 변경 없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치한 사례임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주변 유해 환경	위험 시설	공동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위험 시설이 있거나 또는 입지 예정인 곳은 없는가?	위험 시설 목록,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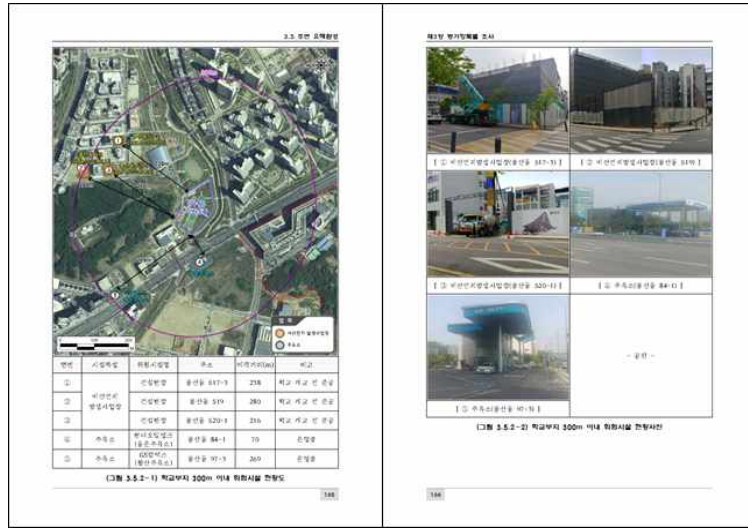
- ☑ 학교주변 위험시설은 교지(校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까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각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시설의 입지(예정) 현황, 학교용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 따라서, 관할 교육청 협조 또는 지자체 정보공개 요청,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학교주변 위험시설 조사 여부 검토 필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위험 시설 목록〉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 라)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바)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 아) 그 밖에 학생의 건강,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용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까지인 구역의 조사·제시 여부를 검토
-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위험시설의 물리적 위치 및 종류, 학교와의 이격거리 등을 제시하고 해당 시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사항(물리적 차폐시설, 녹지조성 등)의 제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증빙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는지 확인)



[그림 64] 학교주변(300m) 위험시설 현장조사 도면 및 사진 제시 사례

■ 검토시 주의사항

- ☑ 학교주변 위험시설의 경우, 교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가급적 없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토지이용계획상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300m 이상 최대한 이격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안전 대책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관할 행정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입지(예정) 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 지정 등을 통해 건물용도를 규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 평가기준에 규정된 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용도 또는 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와의 물리적 차폐방안(완충녹지 확보, 진출입로 이격 등)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중요함

6. 공공시설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공공 시설	기반 시설	공통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이 가능한가?	도면/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 ☑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의 이용 장애 유무에 대하여 조사 여부 검토 필요

■ 필수 검토 자료

-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표기된 자료
- ☑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의 현황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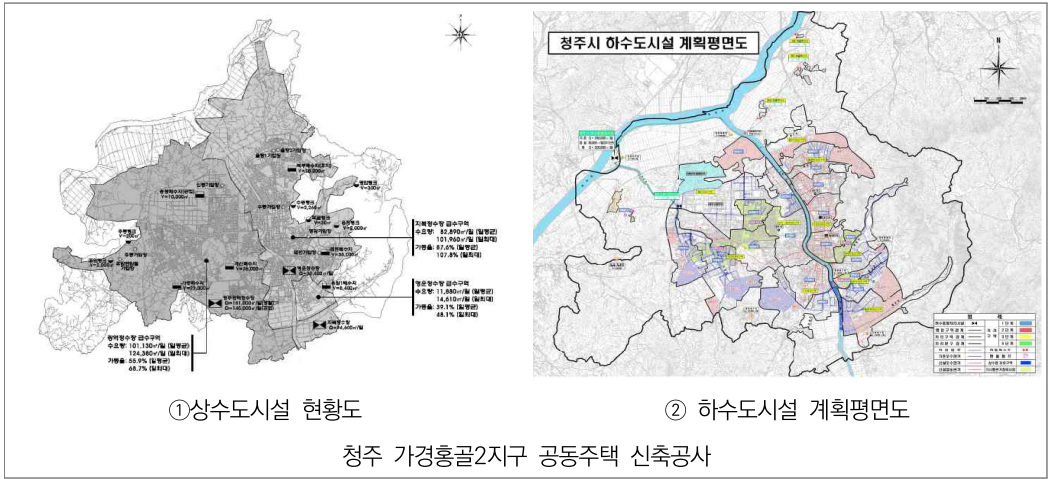
■ 검토시 주의사항

- ☑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변화가 없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일 경우, 기반시설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지를 포함한 인접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필요

구분	공공시설 이용가능성				평가결과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가칭)미사5중	○	○	○	○	부합

하남 미사중학군 내 미사5중학교 설립

[그림 65] 기반시설 이용가능성 검토 자료 사례



[그림 66] 학교의 상·하수도 현황/계획 근거 자료 사례

구분		Check List (점검사항) / 평가기준별		필수 검토 자료		만족 여부	
						O	X
공공 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공동	공사로 인하여 주변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도면/도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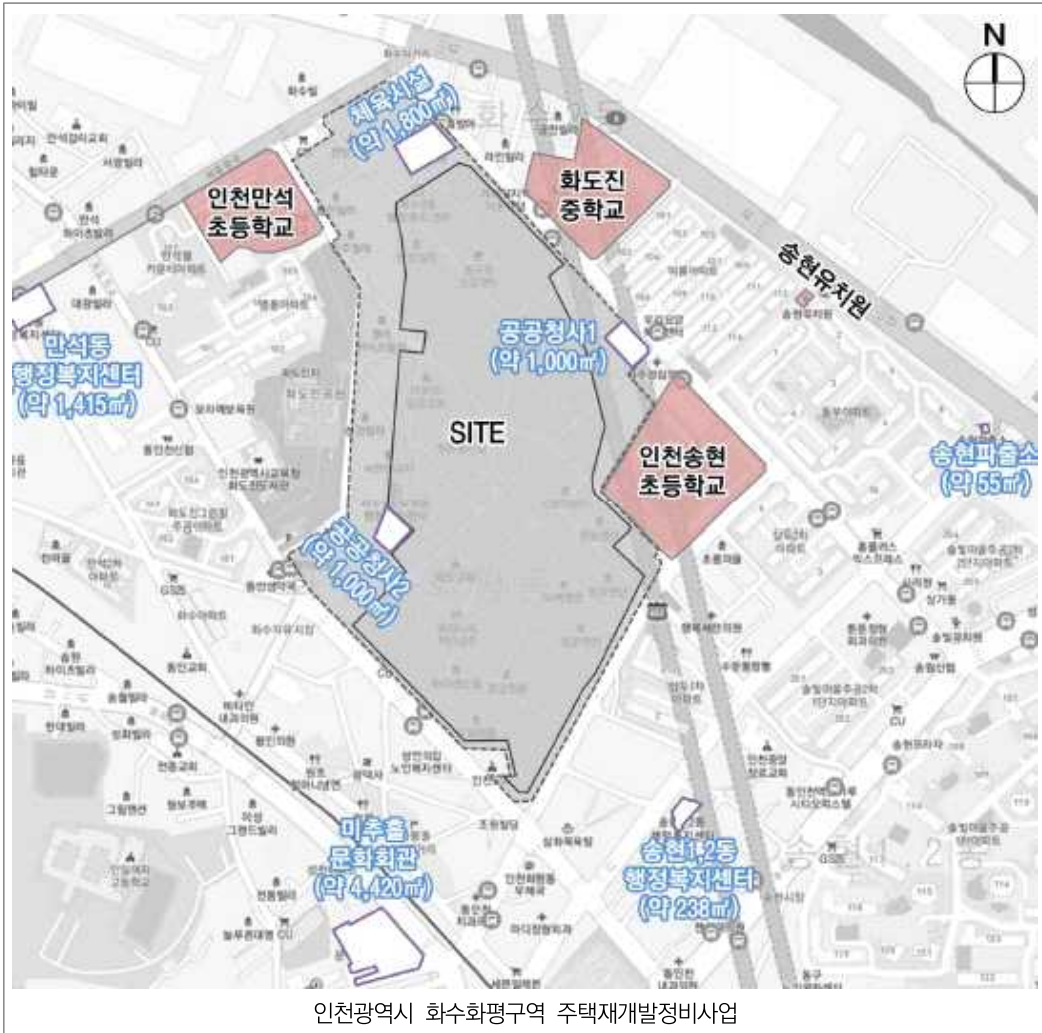
- ☑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장애 유무에 대하여 조사 여부 검토

■ 필수 검토 자료

- ☑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현황과 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계획이 없을 경우, 인접한 공공시설이 표기된 도면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시 주의사항

- ☑ 그 밖의 공공시설 이용성 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이용가능한 공공시설 계획은 없으나 학교용지에 인접하여 공공시설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 “부합”으로 평가



[그림 67] 그 밖의 공공시설 도면

V

FAQ

V

FAQ

질문

교육환경평가 신설학교 중 ‘특수학교’에 대한 통학범위 평가 기준 중 단위통학원 중심배치 평가 방법은?

답변

- 특수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시설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 이동 시설을 학교 등학교 시 신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통학버스나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여 등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위통학권 중심배치는 관련 사유를 제시하고, 평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 단, 지역생활권 차원에서의 균형있는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의 ‘위치’는 신설학교 위치의 평가 기준인 일반사항, 통학범위, 통학안전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임의 생략의 대상은 아닙니다.

※ 참고

[특수교육]

- 근거법령 : 「교육법」 제18조(특수교육)
-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 제2조(정의)제3호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 | |
|-------------------------|---|
| 1. 시각장애 | 7. 의사소통장애 |
| 2. 청각장애 | 8. 학습장애 |
| 3. 지적장애 | 9. 건강장애 |
| 4. 지체장애 | 10. 발달지체 |
| 5. 정서·행동장애 | 11.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 |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 |

질 문

기존침해지점에 대한 일조침해 판별기준은 어떻게 수립된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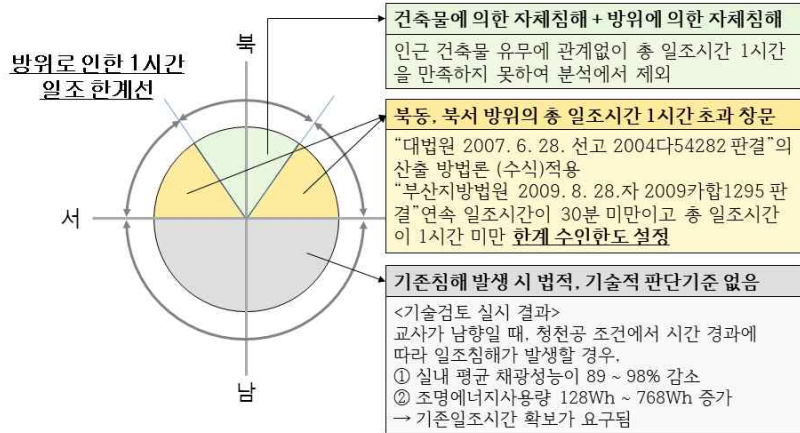
답 변

- 기존침해지점에 대한 일조 침해를 평가하는 법적 기준이 부존재하고, 각급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의 기존 침해지점 이슈는 빈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고,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기준이 달라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과도한 지적에 대한 사업시행자들의 항의 및 법리 검토서를 근거로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 ※ 기존침해지점: 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법적 일조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 기존침해지점 추가 일조시간 감소: 사업시행 이후, 기존침해지역의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 학교 일조권의 교육, 환경적인 가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이후 일조시간이 감소한 학교 건축물의 경우 사업시행 이전만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교육환경에 있어 자체침해 및 구조적으로 일조 확보가 어려운 방위(북쪽방위)의 경우와 남쪽 방위의 창문에 대한 차별화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전문검토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기존침해지점 일조시간 감소’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 시행 이전만큼 일조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으나 의견에 대한 법리적, 기술적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환경의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당 쟁점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 이에 2019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법리적, 기술적 해결책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일조권 관련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8. 28.자 2009카합1295 판결”)와 시뮬레이션 채광성능을 분석해 아래와 같이 창문의 방위별 가치평가를 달리하여 수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수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일조침해지점의 일조시간 확보 관련〉

- 초등학교 교사동의 기존침해지점에서 사업 시행 이후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존침해지점에 대하여 제도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임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기존침해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창의 방위에 따른 규제 방법론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함



〈방위에 의한 기존침해지점 분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에서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연구, 2008,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각 학급별 신축이전의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에 대한 확보 여부와 신축 이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침해로 보고 있음
-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 적용방안 연구」(2019)에서 기술검토 결과, 실내 직사광 유무에 따라 교사가 남향일 때 시간 경과에 따라 실내 평균 채광성능이 89~98%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명에너지사용량이 128Wh~768Wh (500 lux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환경권, 학습권이 저해될 수 있음(해당 결과는 일반 교실 모듈에서 동지일 청천공을 가정한 상태에서 산출된 한정된 결과로 모든 실내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상기 내용 준용 여부는 피해 대상 건물의 용도, 피해 발생 시간(통학전, 수업종료후 여부), 사업자의 대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함

- 제시한 방법론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2020.01부터 2021.09까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설문조사 및 대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에서 기존침해지점 일조평가 방향 결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2021.11.15.「기존침해지점 일조평가 방법 시행계획」배포를 통해 변경전 사업시행 이전만큼 일조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권고하던 의견을 변경후 자체침해 및 구조적으로 일조 확보가 어려운 방위(북쪽방위)의 경우와 남쪽 방위의 창문에 대한 차별화된 기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9. 8. 28.자 2009카합1295 판결”을 인용하여 산출된 수식 이용, 방위별 차별화)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권고의견 변경 전 사업자에 따라 일조 법리 해석을 달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논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더욱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기반 마련하였고, 2021.11 이후 현재까지 모든 교육환경평가에 동일한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지(校地)가 2개 이상 모여있는 경우 대기질 현황 조사(현장 측정)는 모든 교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 대기질 농도의 유효한 측정 범위나 거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교지가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는 경우라면 교지 간의 중간지점 등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교지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및 악취 유발원이 일부 학교 인근에 존재하여, 각각의 교지에 가해지는 대기질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교지에서 대기질을 측정하여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대기질 현황 조사의 종합적·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교지 인근의 도시 대기측정소 자료를 포함하여 기존에 승인된 문헌자료(환경영향평가서, 교육환경평가서 등), 현장 측정 자료를 동시 확인하는 것도 적합한 방법으로 권고합니다.

질문

대기질 영향 예측 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한다면 저감방안 수립 후 대기질 영향 예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참고)

- PM₁₀의 경우 : 100 μ g/m³(24시간), 50 μ g/m³(연간) 이하
- PM_{2.5}의 경우 : 35 μ g/m³(24시간), 15 μ g/m³(연간) 이하

답변

- 대기질 영향 예측 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저감방안 수립 후 대기질 영향 저감 예측을 실시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목표치로,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또는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되기에,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저농도의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건강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오염 수준을 가능한 낮은 농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질문

교육환경평가서에 제시하는 대기질 현황 자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8개 항목 모두를 제시하여야 하나요?

※ 대기환경기준으로 규정된 항목(「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참고)

- 미세먼지(PM₁₀), 초미세먼지(PM_{2.5}),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납(Pb), 벤젠(C₆H₆)

답변

- 대기질 현황 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질 현장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8개 항목에 대해 모두 측정하여 평가서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일부 항목을 측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제시하고 기존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참고로 기존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교 주변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PM₁₀, PM_{2.5}, NO₂를 중점 항목으로 보고, 주로 학교 인근 도시대기측 정소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측정소 자료는 납과 벤젠을 제외한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존학교 리모델링 사업 시 소음도 예측에 대한 방법이 있으시나요?

답변

- 기존학교 리모델링 사업 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 투입되는 공구류 장비로는 Air Gun(못을 박는 기계), 전기드릴(스터드 구멍), 원형톱(목재정단), 전기대패(작업), 컴프레셔 등의 장비를 선정하여 공사 시 예측을 수행합니다.
- 이격거리별 공구류 소음도 측정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구명	상태	PWL _{max} (dB(A))	PWL _{eq} (dB(A))	SPL[dB(A)] : 등가소음도 기준						
				r=5m	r=10m	r=15m	r=20m	r=30m	r=50m	r=100m
타카 (Air Gun)	-	115	108	86.0	80.0	76.5	74.0	70.5	66.0	60.0
전기 드릴	무부하	94	90	68.0	62.0	58.5	56.0	52.5	48.0	42.0
	스터드 구멍	109	101	79.0	73.0	69.5	67.0	63.5	59.0	53.0
원형톱	공회전	110	105	83.0	77.0	73.5	71.0	67.5	63.0	57.0
	목재 정단	116	107	85.0	79.0	75.5	73.0	69.5	65.0	59.0
전기 대패	공회전	100	95	73.0	67.0	63.5	61.0	57.5	53.0	47.0
	작업	112	107	85.0	79.0	75.5	73.0	69.5	65.0	59.0
컴프 레셔	공회전	97	80	58.0	52.0	48.5	46.0	42.5	38.0	32.0
	air 불기	113	93	71.0	65.0	61.5	59.0	55.5	51.0	45.0

출처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6

- 공사 시 예측식은 $SPL_1 = SPL_0 - 20\log(\frac{r_1}{r_0})$ 을 이용하여 대상 학교까지의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를 산정합니다.(기준거리는 15m를 적용하여 예측 수행)
- 모든 소음도는 창문을 통하여 100% 소음도가 대상학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예측소음도를 산정합니다.
- 교사동에서의 소음도 55.0dB(A) 초과 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가설방음판넬, 흡방음 커튼, 갱폼시스템 및 소음저감용 매트 등)

집필진

| 과제책임자 | 임홍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참여진 | 이내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박경훈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윤윤정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김선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강은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유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협력관 | 나광필(교육부)

박형민(교육부)

2023 TR-16

교육환경평가 검토 가이드북

발행 2023년 7월

발행인 조명연

발행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 3,4층

전화: (043) 710-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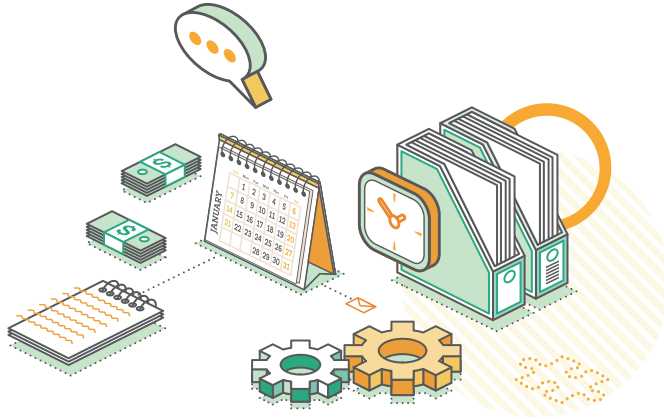
팩스: (043) 710-4004

<http://www.schoolkeepa.or.kr>

인쇄처 디자인포트

전화 (031) 469-0828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비매품)



교육환경평가 검토 가이드북